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



2023년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	2023년	개정사유	쪽수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2) 담배의 폐해 ○ (신설)	2) 담배의 폐해 ○ 흡연은 치은염과 치주염 발생을 증가 시킴. 흡연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구강 위생 저하와 치 태, 치석의 형성을 증가시키며 면역 반응을 악화시켜 잇몸질환을 일으키 고 치아 주변조직을 파괴함.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흡연과 구강질환과의 연관성 강조	p8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 운영 개요	바) 서비스 관리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관리 * (신설)	바) 서비스 관리 - (현행 유지) * 비대면 상담으로 등록 가능(개인정 보처리 동의서는 메일, 우편 등으로 전송하여 서명본 수령 및 보관 필수) * 흡연여부 판정을 위한 코티닌 측정 키트 우편 발송 및 결과 확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률 제고	p47									
	가) 상담서비스 제공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계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반복 실패자, 금 연성공 후 흡연 지속자, 금연클리닉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흡연자 등은 병의원 금연치료사업 및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 타 국가금연지원서 비스로 적극 연계 - (신설)	가) 상담서비스 제공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계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반복 실패자, 니코 틴 의존도 중증 금연시도자 등은 지역 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로 적극 연계 - 금연시도자 지역자원 연계 방안(안)	보건소-지역금연 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	p51									
		<table><tr><th>구분</th><th>보건소 금연클리닉</th><th>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th></tr><tr><th>대상</th><td>·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금연시도자</td><td>· 니코틴 중독이 심 한 흡연자 또는 반 복 재흡연하는 금 연시도자</td></tr><tr><th>추진 내용</th><td>· 금연상담, 금연치료</td><td>· 금연상담, 건강검 진, 심리치료, 행동 치료, 금연치료 등</td></tr><tr><th>연계 방법</th><td>· (접수) 내소자 상담 → (사정) 니코틴 의 존도 등 파악(중증) → 금연캠프 연계</td><td>· (접수) 내소자 상담 → (사정) 니코틴 의존도 등 파악(경 중) → 보건소 금 연클리닉 연계</td></tr></table>			구분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대상	·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금연시도자	· 니코틴 중독이 심 한 흡연자 또는 반 복 재흡연하는 금 연시도자	추진 내용	· 금연상담, 금연치료	· 금연상담, 건강검 진, 심리치료, 행동 치료, 금연치료 등
구분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대상	·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금연시도자	· 니코틴 중독이 심 한 흡연자 또는 반 복 재흡연하는 금 연시도자											
추진 내용	· 금연상담, 금연치료	· 금연상담, 건강검 진, 심리치료, 행동 치료, 금연치료 등											
연계 방법	· (접수) 내소자 상담 → (사정) 니코틴 의 존도 등 파악(중증) → 금연캠프 연계	· (접수) 내소자 상담 → (사정) 니코틴 의존도 등 파악(경 중) → 보건소 금 연클리닉 연계											

구분	2022년	2023년	개정사유	쪽수
2)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	가) 상담서비스 제공 ○ (신설)	가) 상담서비스 제공 ○ <u>금연상담사 감정노동 건강장해 보호 조치 마련</u>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① <u>금연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상담사 보호를 위한 자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담자의 폭언(욕설, 협박, 모욕)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u> ② <u>상담실 출입문, 상담테이블 등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안내문을 게시하고 비대면 상담(전화 등)시 통화 연결음에 상담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멘트를 송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u> ③ <u>폭언(욕설, 협박, 모욕) 등의 강성 민원 상담에 대한 단계별 대처요령</u>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상담사 보호 조치 마련	p51~52
	나) 니코틴보조제 제공 ○ (신설)	나) <u>니코틴보조제 제공</u> ○ <u>보조제 및 제품 별 용법 및 용량</u> * 세부사항 니코틴보조제 이용방법 가이드라인 참고	니코틴보조제 이용방법 가이드라인('22년 6월) 반영	p54~55
	다) 금연홍보물품 ○ <u>금연클리닉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제공 가능</u> * (신설)	다) <u>금연홍보물품</u> ○ (현행유지) * <u>금연홍보물품 및 행동강화용품의 경우 비대면 상담을 통한 우편 제공 가능</u>	서비스 제공 편의성 향상	p56
	다) <u>금연홍보물품</u> ○ (신설)	다) <u>금연홍보물품</u> ○ <u>아로마파이프 등 껴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제공 지양</u>	궤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재평가 결과 반영	p57
	라)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CO 또는 코티닌 측정 확인 후 제공 가능 * 전자담배 등(궤련형 전자담배 포함) CO측정으로 금연 파약이 어려운 경우는 코티닌 검사 시행	라)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 (현행 유지) * 전자담배 등(궤련형 전자담배 포함) CO측정으로 금연 파약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상자가 감염 우려 등으로 CO측정을 원치 않는 경우는 코티닌 검사 시행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CO측정 제한조건 추가	p57

구분	2022년	2023년	개정사유	쪽수
행정 사항 ① 인력 3)금연 상담사	○ 자격요건 및 기준 · 사업수행 인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서에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신설)	○ 자격요건 및 기준 · (현행 유지) * 신규 금연상담사 현장 투입 전 중 앙 및 시도 금연상담 교육과정 14 시간 이상 이수 권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지침 내 전문인력 교육기준 반영	p62
	○ 금연상담사 교육 (표)	○ 금연상담사 교육 (표 수정)	금연상담사 교육과정 추가 (2022년 신설)	p62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인건비 - 급여는 월 210만원 이상 지급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인건비 - 급여는 월 213만원 이상 지급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인건비 최저기준 명시	p64
	2) 예산 집행기준 ○ 시·도에서는 지역 내 인구 및 흡연율, 상담목표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국 고보조금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시·군·구 예산배정액을 조정 가능 (시도에서는 조정통보 후 1주일 이내 반드시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 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보고)	2) 예산 집행기준 ○ (삭제)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지침 내 예산집행기준 반영	p65
사업실 적보고	○ 정부합동평가지표 안내 - 2023년(22년 실적) 합동평가지표 (금연) 세부내용	○ 정부합동평가지표 안내 - 2024년(23년 실적) 합동평가지표 (금연) 세부내용	23년 합동평가 지표 설명 수정	p72- 73
개인 정보 보호 관련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정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	p75- 77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세계 금연정책 동향	12
3.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18
4. 지역사회 금연정책 추진방향	29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I.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개요	35
1. 사업 개요	35
1) 사업 목적	35
2) 추진경과	35
3) 수행기관	36
4) 사업 내용	37
5) 대상자	37
2. 사업 추진체계	39
1) 사업추진체계도	39
2) 기관별 역할	39
II.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42
1. 금연 환경조성	42
1) 금연구역 확대 정착(지도점검 강화)	42
2) 포괄적 금연사업 추진	43
2.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46
1) 운영 개요	46
2)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49
3)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57

3.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동 금연클리닉)	59
4. 시도 단위 금연사업	60
1) 개요	60
2) 내용	60
III. 행정사항	61
1. 인력	61
2. 사업실적 보고	67
1) 사업실적 보고	67
2) 사업실적 지표	69
3) 정부합동평가지표 안내	72
IV. 관련 서식	74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74
2.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78
3. 금연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금연상담 기록지	82
4. 시·도별 금연사업 실적보고 서식	86

3부 참고자료

I.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1~2030) - 금연부분	97
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소개	97
1) 수립배경	97
2)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	97
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주요 과제	98
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중점과제별 성과지표(금연)	99
1)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100



2)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101
3)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101

II.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 102

1) 시스템 개요	102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103
3)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105
4) 종결 정보 수정 안내	105
5) 시스템 사용 관련 Q&A	106
6) 주요 개편사항	115

III. 국가 금연사업 현황 117

1.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117
1) 금연상담전화(1544-9030)	117
2)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go.kr)	119
3) 지역금연지원센터(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운영	121
4)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124
2. 금연환경조성 사업	125
1) 금연환경조성 제도화	125
2) 대국민 홍보사업	125
3. 학교 흡연예방 및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134
1) 학교흡연예방사업	134
2)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136
4. 국제협력	141
1)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개요	141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143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144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1) 흡연 현황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음. 그 중 80%는 매일 흡연자이며, 성인 남성의 31%, 여성의 8%가 흡연자임. 흡연자들은 연간 약 6조 개피의 담배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됨. 지난 30년 동안 남성 흡연율은 국가 간 편차가 있지만 약 10% 감소했는데, 중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에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¹⁾ 1980년 이후로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흡연인구와 담배소비량은 증가해 왔음.²⁾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2010년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15세 이상 흡연율의 30% 상대적 감소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음³⁾
-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에서 담배가격 인상(2004년·2015년),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 캠페인·홍보 등 강화된 금연정책 시행에 따른 금연 규범의 확산으로 2021년 조사 결과 남자 31.3%, 여자 6.9%로 2019년에 비해 남자는 2.7%p 감소하여 1998년 이후 가장 낮았고 여자는 2020년 결과와 유사함. 우리나라의 성인여성 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낮게 보고되고 있으나 젊은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는 추세임(성인 여성 흡연율 2001년 5.2% → 2021년 6.9%)

1)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2015

2) Ng M et al. Smoking prevalence and cigarette consumption in 187 countries, 1980–2012. JAMA 2014;311(2):183–92

3)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NCDs, 2014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연도별 성인 현재흡연율

(단위 : %)

구분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0.2	28.8	25.3	27.7	27.2	27.5	27.0	25.8	24.1	24.2	22.6	23.9	22.3	22.4	21.5	20.6	19.3
남자	60.9	51.6	45.0	47.7	46.9	48.3	47.3	43.7	42.1	43.1	39.3	40.7	38.1	36.7	35.7	34.0	31.3
여자	5.2	5.7	5.3	7.4	7.1	6.3	6.8	7.9	6.2	5.7	5.5	6.4	6.0	7.5	6.7	6.6	6.9

※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OECD 국가의 만 15세 이상 성인 매일 흡연율

(단위 : %)

국 가	남성	여성	전체
호주	12.4	10.0	11.2
오스트리아	23.5	17.8	20.6
벨기에	18.9	12.1	15.4
캐나다	11.3	7.6	9.4
칠레	17.7	17.5	17.6
코스타리카	11.5	4.3	7.8
체코	21.2	12.2	16.6
덴마크	15.2	12.7	13.9
에스토니아	25.7	12.6	17.9
핀란드	14.0	11.0	12.0
프랑스	29.1	22.0	25.5
그리스	31.3	19.0	24.9
헝가리	27.7	22.3	24.9
아이슬란드	7.5	6.8	7.2
아일랜드	17.0	14.0	16.0
이스라엘	21.7	11.4	16.4
이탈리아	22.5	15.4	18.8
일본	27.1	7.6	16.7
한국	27.8	3.9	15.9
라트비아	35.2	12.3	22.6
리투아니아	29.9	9.7	18.9
룩셈부르크	21.0	17.4	19.2
멕시코	12.3	2.9	7.4
네덜란드	15.7	13.1	14.4
뉴질랜드	9.5	9.2	9.4
노르웨이	6.0	9.0	8.0
폴란드	20.8	14.1	17.1
포르투갈	20.2	9.0	14.2
슬로바키아	26.9	15.4	21.0
슬로베니아	19.3	15.6	17.4
스페인	23.3	16.5	19.8
스웨덴	10.2	8.7	9.5
튀르키예	41.3	14.9	28.0
영국	15.3	13.7	14.5
미국	10.3	8.6	9.4
평균	20.0	12.3	16.0

※ 자료원: OECD, Health at a Glance 2021(latest data available)

-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은 4.5%(남자 6.0%, 여자 2.9%)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흡연율의 변화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캠페인 강화, 학교 흡연예방교육 활성화, 청소년의 담배구매 금지 환경 조성, 담뱃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정책의 강화 및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9.7	9.2	7.8	6.3	6.4	6.7	6.7	4.4	4.5
남 자	14.3	16.0	17.4	16.8	17.4	16.6	17.2	16.3	14.4	14.0	11.9	9.6	9.5	9.4	9.3	6.0	6.0
여 자	8.9	9.2	8.8	8.2	7.6	7.1	6.5	5.9	4.6	4.0	3.2	2.7	3.1	3.7	3.8	2.7	2.9

※ 자료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연도

OECD 국가의 청소년(15세) 현재 흡연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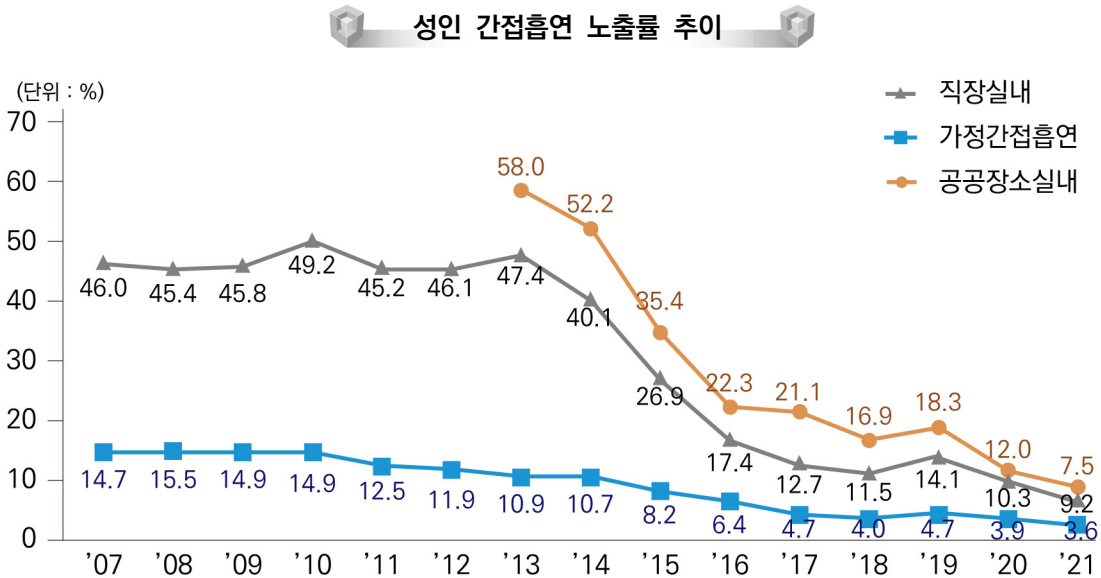
국 가		남자	여자	전체	연도
한국*	중3	3.5	2.5	3.0	2021
	고1	7.3	3.4	5.4	
아이슬란드		3.0	3.0	3.0	2013-2014
노르웨이		5.0	3.0	4.0	2013-2014
캐나다		5.0	5.0	5.0	2013-2014
호주		5.1	5.9	5.5	2013-2014
스웨덴		6.0	7.0	6.5	2013-2014
덴마크		7.0	8.0	7.5	2013-2014
아일랜드		8.0	8.0	8.0	2013-2014
영국		8.0	9.0	8.5	2013-2014
스페인		8.0	10.0	9.0	2013-2014
스위스		11.0	9.0	10.0	2013-2014
벨기에		11.0	10.5	10.8	2013-2014
네덜란드		11.0	11.0	11.0	2013-2014
포르투갈		12.0	10.0	11.0	2013-2014
이스라엘		17.0	6.0	11.5	2013-2014
에스토니아		13.0	11.0	12.0	2013-2014
핀란드		15.0	11.0	13.0	2013-2014
체코		11.0	16.0	13.5	2013-2014
슬로베니아		15.0	12.0	13.5	2013-2014
러시아		17.0	10.0	13.5	2013-2014
독일		13.0	15.0	14.0	2013-2014
라트비아		15.0	13.0	14.0	2013-2014
오스트리아		15.0	14.0	14.5	2013-2014
그리스		16.0	13.0	14.5	2013-2014
폴란드		15.0	15.0	15.0	2013-2014
룩셈부르크		13.0	18.0	15.5	2013-2014
리투아니아		20.0	12.0	16.0	2013-2014
슬로바키아		16.0	18.0	17.0	2013-2014
프랑스		18.0	20.0	19.0	2013-2014
헝가리		20.0	21.0	20.5	2013-2014
이탈리아		20.0	22.0	21.0	2013-2014
평균 ※ 한국 미포함		11.9	11.6	11.7	-

※ 자료원: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현재흡연율) 일주일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흡연한 청소년의 비율

* (한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21, (현재흡연율) 지난 30일 이내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의 비율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현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공공장소실내 7.5%, 직장실내 9.2%, 가정실내 3.6%임. 음식점 등 금연구역이 전면적으로 확대·강화된 이후로 간접흡연 노출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자료원: 질병관리청, 2021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발표집

2) 담배의 폐해

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직접적인 소비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한 노출 또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약 8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80만 명 이상은 간접흡연 노출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됨.⁴⁾ 담배로 인한 사망은 전 세계 남성 사망의 12%, 여성 사망의 7%를 차지함.⁵⁾ 담배로 인한 사망의 3분의 2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며,⁶⁾ 고소득 국가 기준으로 담배 약 1백만 개비 소비 시 1명의 사망을 초래함.⁷⁾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약 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⁸⁾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lobal report. Mortality attributable to tobacco,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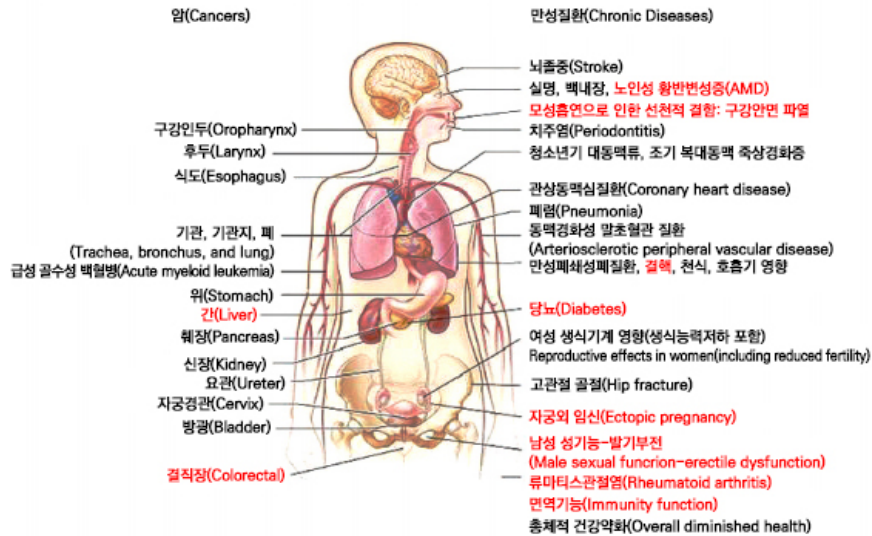
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5

6)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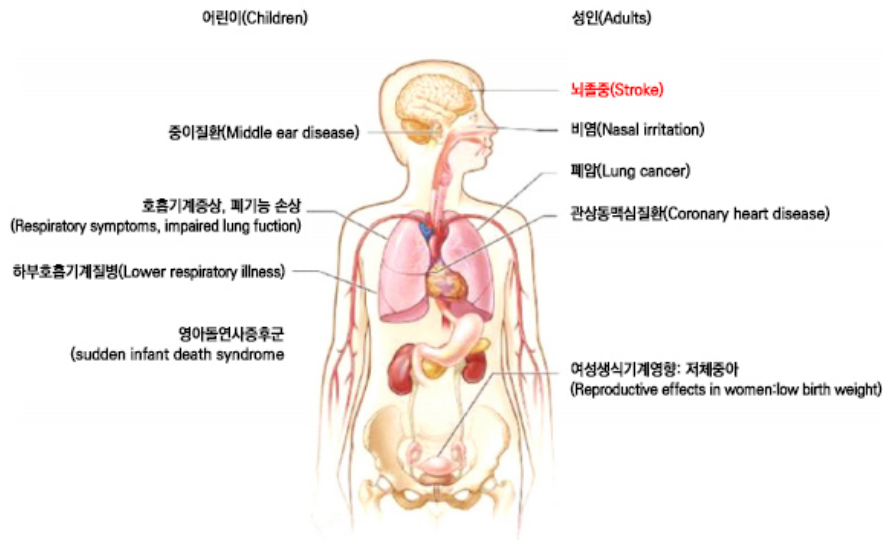
7) Jha & Peto. Global Effects of Smoking, of Quitting, and of Taxing Tobacco. N Engl J Med. 2014; 370:60-68

8) Jha P. Avoidable deaths from smoking: a global perspective. Public Health Reviews. 2012; 33: 569-600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건강문제



※ 자료원: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US Surgeon General, CDC, 2014 (붉은색으로 표시된 질환은 새롭게 보고된 흡연 관련 질환임)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 모든 폐암 사망의 71%, 만성 호흡기 질환의 42%, 심혈관 질환의 10%는 흡연에서 기인하며, 흡연은 만성질환 뿐 아니라 결핵 및 하기도 호흡기 감염 등 감염성 질환의 주요한 원인임.⁹⁾ 또한 중년 남성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중년 여성에서는 고혈압에 이은 두 번째 위험요인임.¹⁰⁾ 또한 흡연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조울증, 정신분열병, 그리고 산모의 흡연으로 인한 유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아이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타 선천적 장애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¹⁾ 이 밖에도 흡연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버거병 등), 호흡기 질환(천식, 결핵, 비염 등), 소화기 질환(결장폴립, 크론병,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등), 구강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피부질환, 생식계통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¹²⁾. 흡연은 치은염과 치주염 발생을 증가시킴. 흡연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구강 위생 저하와 치태, 치석의 형성을 증가시키며 면역반응을 약화시켜 잇몸질환을 일으키고 치아 주변조직을 파괴함¹³⁾
-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장기적인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25~35% 높임. 천식을 가진 성인이 간접흡연에 노출 될 경우 심각한 폐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에 짧게 노출되더라도 비흡연자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¹⁴⁾
-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흡연보다 치명적임.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가함. 또한 흡연이 20여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연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2020년대의 흡연 피해 규모는 현재 30대 이후 세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되며, 2030년대 이후의 흡연 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됨.¹⁵⁾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에 그 피해가 심각해지며, 이러한 흡연의 피해는 고령화와

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2

10) Eriksen M et al.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 & World Lung Foundation, 2015

11) Royal College of Physicians,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Smoking and mental health. London: RCP, 2013

1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4

13)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4) ASH. 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2014 (www.ash.org.uk)

15) Peto et al., Smoking, Smoking Cessation, and Lung Cancer in the U.K. since 1950: Combination of National Statistics with Two Case-Control Studies. British Medical Journal. 2000;321(7257):323-29

더불어 상승 작용을 하게 될 것임

- 흡연으로 인한 질병 외에도 담배 재배로 인한 위험이 있음. 담배 재배자들은 젖은 담배 잎과 접촉하여 니코틴이 피부로 흡수되어 생기는 녹색 담배병(GTS: Green Tobacco Sickness)을 호소함. 그리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담배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의 살충제와 비료가 사용되는데 이는 담배 재배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됨. 특히 개발 국가에서의 담배 경작에 비용의 절감을 위해 아동의 노동력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GTS 및 농약에 대한 노출 문제가 심각함¹⁶⁾

나) 사회경제적 부담

- 담배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적으로 빈곤을 증가시킴.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가정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음. 이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 같은 필수항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을 의미함. 이집트, 네팔, 불가리아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가계지출의 10~15%가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며,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교육비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은 담배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뿐 아니라, 담배가 원인이 되는 질환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함. 미국의 경우 담배 소비로 인한 의료비 지출 비용은 연간 75억 달러 이상,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도 연간 800억 달러 이상이며, 유럽의 경우 담배 소비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연간 250억 유로, 생산성 손실 비용은 연간 80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 됨.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거 흡연으로 인한 영향이 폐해발생에 지속되고 있음. 2019년 기준 직접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소계가 4조 4,837 억원, 조기사망비, 생산성손실비, 흡연시간으로 인한 생산성저하액, 금단현상으로 인한 생산성저하액과 같은 간접비는 8조 3,84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음.¹⁷⁾

16) ASH. Tobacco and the developing world, 2015 (www.ash.org.uk)

17) 이선미 등,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2015~2019년을 대상으로, 2021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2017년	2018년	2019년
직접의료비	3조 1,258억원	3조 3488억원	3조 8,757억원
교통비	323억원	345억원	384억원
간병비	3,012억원	3,549억원	5,696억원
직접비 소계	3조 7,183억원	3조 8,891억원	4조 4,837억원
조기사망비	4조 1,771억원	4조 2,495억원	4조 4,975억원
생산성손실비	1조 1억원	1조 520억원	1조 756억원
흡연시간으로 인한 생산성저하액	2조 3,653억원	2조 4,608억원	2조 4,232억원
금단현상으로 인한 생산성저하액	378억원	394억원	388억원
간접비 소계	7조 9,215억원	8조 1,560억원	8조 3,840억원
총액	11조 6,398억원	12조 451억원	12조 8,677억원

※ 자료원: 이선미 등,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2015~2019년을 대상으로, 2021

- 또한 담배는 외환유출, 밀수, 그리고 환경 피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국가를 빈곤하게 만들. 많은 나라들은 담배잎과 담배상품을 수입하는 순수 수입국임. 2002년에는 161개국 중 3분의 2가 수출보다 더 많은 담배잎과 상품을 수입하였음. 또한 국제적으로 수출된 담배의 3분의 1이 암시장과 밀수와 같은 불법 거래를 통해 세금을 누락시키고 있음. 국가청렴도국제지표에 의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담배 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에 따라 상승함. 또한 담배잎을 훈제(cure)하기 위한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고, 나무로 훈제실을 만들고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담배 농사를 위해 벌목되며, 개발도상국가의 모든 산림 훼손 중 5%가 담배 때문에 사라지는 등 담배산업은 환경을 파괴함. 남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담배 훈제 연료로 원시림이 사라지는데 이는 전체 훼손의 12%에 해당됨. 또한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 손실, 농약과 비료의 오염, 그리고 담배제조로 인한 막대한 쓰레기도 환경파괴로 이어짐. 1995년에 23억kg의 제조상 폐기물, 2억 9백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1998년 9억5천4백만kg 필터 생산이 있었으며, 그 외 담배포장지, 라이터, 성냥 등도 환경파괴 물질임¹⁸⁾

18) World Health Organization. Fact Sheet: Tobacco increases the poverty of countries, 2004

3) 담배규제 정책의 효과

- 전 세계 126개국에서 담배 수요 감소 정책(MPOWER: FCTC 제6조 담뱃세 인상, 제8조 금연구역 강화, 제11조 경고문구·그림 도입·확대, 제13조 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규제, 제14조 금연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을 가장 강한 수준으로 시행한 경우, 흡연율('05년~'15년)은 MPOWER 정책 단위별로 평균 1.57%p(국가별 소득, FCTC 비준 여부, 지역 보정 시 0.94%p)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단위별 흡연율의 상대적 감소율은 7.09%(국가별 소득, FCTC 비준 여부, 지역 보정 시 3.18%)로 나타났음¹⁹⁾
- 유럽연합(EU)은 WHO FCTC 권고안에 따른 담배제품의 제조, 판매 및 포장·표시·광고 등 공급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담배규제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s, 2014/40/EU)을 도입할 경우, 법률 도입 5년 이내 궤련담배 소비량이 총 1.7%~2.6% 감소(니코틴 포 함 제품 규제 0.2~0.3%, 경고문구·경고그림·무광고포장 등 포장 및 표시 규제 1.15%, 성분규제 0.5~0.8%)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새로운 담배규제 법률의 도입을 통해 유럽 내 흡연인구를 약 240만명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음²⁰⁾

유럽 담배규제지침(TPD)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추정

〈단위: 유로(EUR)〉

담배소비 2% 감소 시의 비용·편익	
담뱃세 수입 감소	△15.8억
조기사망 비용 감소	103.3억
의료비 지출 감소	5.1억
생산성 손실 감소	1.6억
총 편익	94.2억

* 사망감소 및 의료비 감소 등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시간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는 가정하지 않음

19) Gravelly et al., Implementation of key demand-reduction measures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nd change in smoking prevalence in 126 countries: an association study. The Lancet Public Health. 2017;2:e166-74

20)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COM(2012) 788 final (https://ec.europa.eu/health/sites/health/files/tobacco/docs/com_2012_788_ia_en.pdf)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2 세계 금연정책 동향

- 유럽연합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65%), 가향담배 금지 및 담배제품 판촉·오도 문구 금지 등을 포함하는 담배규제법(Tobacco Control Directives) 개정안을 채택 하였으며 (2014년), 호주의 담배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2012년)의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도 2015년부터 담배의 무광고 포장법 시행 중
- 2015년부터 영국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캐나다 앨버타주는 모든 종류의 가향담배를 판매금지 하였음. 싱가포르의 담배, 니코틴 액상, 무연담배 및 신종담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담배판매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국가		주요내용
아시아	한국	• 정부차원의 결연형 전자담배 안전성 및 유해성 분석 계획 발표(2017년 7월) •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 마련(2017년 8월) • 결연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2017년 10월) • 흡연카페 금연구역 적용(2018년 7월)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2018년 12월)
	스리랑카	• 2020년까지 담배 경작 금지를 포함한 흡연 규제 계획 발표 (2017년 9월)
	라오스	•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및 건강경고 면적 확대(2017년 5월)
	대 만	• 3인 이상 공공장소 전면 금연(2009년) • 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흡연할 수 없음('10.1.1)
	홍 콩	• 담배행상과 노점상들도 담배광고 금지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의 노출금지 (2009년)
	베트남	• 실내금연 의무화(2009년) •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및 대중교통망 등에서 흡연금지(2010년) • 실내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로 확대,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및 담배규제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포괄적 담배규제법 최초로 채택 (2013년)
	말레 이시아	•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경고 실시(2009년) • 옥외를 포함한 모든 식당 및 국립·공공 공원 금연구역 지정(2015년) • 결연을 포함한 담배제품 구매 최소연령 21세로 상향 조정 및 아동과 동승한 차량 내 흡연 금지 추진(2015년) • 간접흡연 방지 위해 국·공립 공원 전역 금연구역 지정(2017년 2월)

국가	주요내용
아시아	중 국 • 항저우시, 세계 금연의 날(5.31)은 담배판매금지 조례제정(2009년) • 광저우시, 9월부터 사무실, 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시 벌금 • 상하이시, 강력한 금연법 예정(2009년) • 인터넷카페(피씨방), 대규모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학교 등 완전 금연 • 베이징시, 6월부터 공공장소와 실내 작업장,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흡연 금지 담배 광고, 홍보 및 후원 활동 불법화(2015년) • 상하이시, 실내 공공장소 및 일부 실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2017년 3월)
	오 만 • 판매 시점(Point-of-Sale)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 시행(2017년 2월)
	일 본 • 도쿄 지요다 구, 특정 정부청사 및 비즈니스 구역 중심부의 변화가 금연구역 지정(2002년 11월) • 교토 시, 관광지 및 교토 역 주변거리 금연구역 지정(2007년 2월) • 대중장소에서 간접흡연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시행(2010년) • 역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제정(2010년) ... 신주쿠 등 3개구 • 공공장소내 전면 금연실시(2010년) ... 가나와현 등 19개 지자체 법규화 • 음식점 실내 흡연 원칙적 금지 개정안 초안 공개(2017년)
	싱가폴 • 시샤(물담배)의 수입, 유통 및 판매 금지(2014년 11월) • 물담배, 액체 니코틴,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 판매 및 사용 금지(2015년 12월) • 담배 구매 연령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2019년 19세, 2020년 20세, 2021년 21세까지 3년에 걸쳐 점진적 인상) • (목표) 2020년까지 흡연율 10% 이하로 감소 • (추진내용)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소매상 내 진열 금지, 온라인 광고를 포함한 모든 담배광고 금지,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홍보 금지 - 지역사회 및 약국을 기반으로 한 금연 상담, 학교 및 직장 제휴 금연 프로그램 제공
	필리핀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로 확대(2014년 8월)
	인도네시아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2014년 6월)
	태 국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최대 85%까지 부착하는 법률 시행(2014년 6월) • 담배 구입 가능 연령 18세에서 20세로 조정 및 벌금 상향 등 강화된 담배제품규 제법 발효(2017년 7월) • 주요 관광 해변 20곳 흡연 금지 법안 시행(2017년 11월)
	파키스탄 • 담뱃갑 경고그림 최소 면적을 '양면 모두 85%이상'으로 확대 (2015년) • 지방정부에 담배규제 실효성 보장 위한 고시 공표(2017년 3월)
	인 도 • 담뱃갑 경고그림 최소 면적을 '양면 모두 85%이상'으로 확대 (2015년) • 필립모리스에 담배 마케팅 법률 위반 고지 및 주 정부에 담배회사의 위법 마케팅 행위 적극 대응 요청 (2017년 9월)

국가	주요내용
북미	미 국
	• (실외 금연구역) 캘리포니아 주 칼라바사스 시, 개인 주거 공간 이외의 거리, 인도, 주차장, 공원 등의 모든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 금지(2006년 조례 채택) • (실외 금연구역) 캘리포니아 주 버뱅크 시, 모든 인도 및 시내의 야외공간에서의 흡연 금지(2007년 조례 채택) •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차량안 흡연금지(2009년) • 미국 연방 정부 건물 완전 금연지역(2009년) ※ 26개주 모든 정부건물 완전금연 건물, 19개주는 모든 민간기관의 건물도 포함 • 버지니아주, 모든 식당과 바를 금연지역으로 하는 흡연규제법 통과(2009년) ※ 버지니아주는 담배재배 본산지로 금연관련법안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음 • 식품의약국(FDA)은 과일을 비롯한 캔디, 혹은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 및 시판 금지(2010년) • (실외 금연구역) 뉴욕 주 뉴욕 시,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및 헤럴드 스퀘어(Herald Square)와 같은 보행자 광장 금연구역 지정(2011년) • 뉴욕,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도 담배피면 벌금 등 강력한 금연법 실시 • 흡연과 건강에 관한 1964년 공중위생국장보고서(Surgeon General's Report) 발간 50주년 기념 2014년 보고서 발표(2014년 1월)식품의약국(FDA),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Real Cost 발표(2014년 1월) • (실외 금연구역) 오리건 주 애슐랜드 시, 도시 내 모든 대로의 인도 흡연금지 (2016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연방정부 소유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지, 사무실, 공동 소유지, 건물로부터 25피트(7.5m)이내 지역 흡연 금지 추진(2017년 말 시행) • 괌, 담배 구입연령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2017년 2월) • 몬테나 주, 담뱃세 인상 등 관련 법안 상원 통과(2017년 3월) • 뉴욕 시, 대대적인 담배규제 강화 조례안 발의(2017년 4월) • 캘리포니아 주 라구나 시, 주택과 자동차 내부 외 도시 전체 금연구역 지정(2017년 5월) • 샌프란시스코 시, 멘톨 포함 가향담배 판매 금지 도입(2017년 6월) • 캘리포니아 주, 멘톨 함유 담배제품 판매 금지 법안 통과(2017년 9월) • 뉴욕시, 물담배 규제 법안 마련(2017년 10월) • 하와이, 미성년자 동승 차량 내에서 흡연 금지 법안 통과(2017년 10월) • 미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 담배 제조회사에 흡연 유해성 인정하는 광고 1년간 시행 의무 부과(2017년 11월) • 캔터키 주, 껌 한갑에 부과되는 담뱃세 1달러 인상(2018년) • 샌프란시스코,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전자담배 판매·유통 금지(2020년 1월) • 리비모어, 오프라인 상점에서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 금지(2020년 1월) • 캘리포니아 주 비벌리힐스 시의회, 담배 제품 지역 판매 금지 조례안(2021년 1월 1일 시행)

국가	주요내용
북미 캐나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로비, 세탁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과 아파트입구, 열린 창문, 공기 흡입구(air intakes) 3미터 이내 흡연 금지(2008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워털루 시, 모든 지역소유 공공주택(Community Housing) 내 주거지(발코니, 파티오 포함) 흡연 금지(약 2,700가구)(2010년) • 세계 최초로 궐련담배(2009년) 및 시가담배에 가향물질 첨가 금지(2015년) • 앨버타 주, 모든 종류의 가향담배 판매 금지(2015년) • (실외 금연구역) 노스웨스트 준주(2006년)는 실외 버스 정류장, 온타리오 주(2015년)는 실외 체육·문화 시설의 좌석, 뉴브런즈윅 주(2015년)는 해변에서의 담배사용을 금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온타리오 주,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주차장, 세탁시설, 로비 등의 공공이용시설에서의 흡연 금지(2016년) • 담배제품 내 멘톨 성분 금지 법안 통과(2017년 4월) • 공공장소 흡연 규제법 강화 개정(2017년 9월)
오세 아니아	• 표준 디자인 담배갑(plain package) 처음 시행국가(2010년) ※ 2012년부터 담배 갑 녹색배경에 브랜드명과 그림경구만 표기 • 보건부 공무원은 근무중 흡연 금지(2010년) ※ 근무시간 전·후, 점심시간만 가능하며, 건물 15미터 이내는 금연 • 빅토리아주, 자동차 내에서 흡연 및 소매상의 담배전시 금지(2009년) 및 길을 포함하는 야외에서의 흡연 금지(2010년) • (실외 금연구역) 퀘베크 주(2010년), 태즈메이니아주(2012년), 보행자 전용구역(pedestrian malls)을 금연구역으로 제정 • 담뱃세 인상(12.5%)으로 담배 한 갑 당 가격 \$27(약 22,300원), 2016년 \$30로 추가 인상 예정(2015년 9월) •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Standardized Package) 규제 정당성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잠정적 승소(2017년 5월)
뉴질랜드	• University Auckland 전체(빌딩내와 교정 전체)가 처음으로 완전 금연지역 실시(2009년)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추진(2013) •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Standardized Package)을 위한 새로운 건강경고 시안 공개(2017년 6월) 및 전면 시행 예정(2018년 6월부터) • (목표) 2025년까지 국가 흡연율 5% 미만으로 감소 • (추진내용) 3년간 매년 10%의 담뱃세 인상을 정기적으로 추진 - 무광고 표준담뱃갑, 니코틴 함량 감소, 멘톨 등 첨가제 및 가향물질 사용 금지, 필터사용 금지, 담배연기 pH농도 규제를 고려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국가	주요내용
이탈리아	• 교황청 내 면세담배 판매 금지(2018년)
터 키	• 술집, 카페, 식당 등 실내 흡연금지 실시(2009년)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65% 의무화 및 오도문구 금지(2012년) • 포괄적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 조치 이행(2012년) • 후카(물담배)에도 결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발표(2014) •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Standardized Package) 적용 및 금연구역 강화 계획 발표(2017년 8월)
아일랜드	• 세계 최초로 술집과 식당 등 실내작업장 금연 실시(2004년) • 담배광고 완전금지 첫 국가(2009년 유럽연합 27개국 중) • 세계에서 세 번째, EU 국가 중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도입 추진(2014년) • (목표) 15세 이상 흡연율 22%를 2025년까지 5% 미만으로 감소 • (추진내용) 담배업계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 금연지원 및 교육 강화
웨일즈	• 2020년까지 흡연율 16%로 감소 계획 발표(2017년 9월)
영 국	•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금지법 상원통과(2009년) • 담배자판기 판매 금지(2009년) • 자녀들 앞에서 흡연금지법 재정(2009년) • 집주인 90%가 흡연자에게 집을 세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2010년) • 담배 진열 판매 금지 시행(2013년) ※ 단 소형 상점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15년 4월부터 적용 • 담배제품의 무 광고포장 의무화 법안 통과(2015년 3월) • 18세 미만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18세 미만 탑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 금지 (2015년) •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Standardized Package) 시행 관련 상급법원 소송에서 담배회사 측 패소(2017년 4월)
스코틀랜드	• (목표) 2034년까지 성인인구 흡연율을 5% 미만으로 감소 • (추진내용) 소매점 및 모든 상점에서 담배진열 금지, 금연 약물치료, 지역약국 금연서비스, 전국 금연전화 서비스 제공
독 일	• 2010년부터 경고그림 실시(2009년)
프랑스	• 한 갑당 0.2 유로 담배가격 인상(2013년 7월) • 담배제품 무광고포장법 도입 결정(2015년) • 3년 내 결련 가격 40% 인상 계획 발표(2017년 7월)
유럽연합	• 유럽연합 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 개정안 통과(2014년 4월)
러시아	• 술집, 레스토랑, 호텔, 선반, 열차 내 공간으로까지 금연구역 확대(2014년 6월)
체 코	• 주점, 식당, 카페 등 실내 흡연 전면 금지 시행(2017년 7월)

국가		주요내용
유럽	폴란드	•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와 어린이동석차량 내에서의 금연, 소매점에서의 담배진열 금지(2009년)
	핀란드	• 담배판매소에서 담배진열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 통과(2010년) • 2040년까지 국가 흡연율 2% 미만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Roadmap towards a Smoke-Free Finland) 발표(2014년 6월) • (추진내용) 담배제품의 진열 금지, 담배자판기 금지, 무광고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 공동주거공간 및 실외 행사, 아동이 탑승한 차량 내 흡연 규제 - 담뱃세 인상 및 담배회사에 담배로 인한 환경폐기물 처리 책임 부과 - 담배 가향물질 및 첨가제 금지
	그리스	• 담배광고 전면금지,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벌금부과 등 강력한 금연정책 실시(2010년)
	북아일랜드	• 담배 완전 불법화를 목표(2009년)
	네덜란드	• 2020년까지 슈퍼마켓에서의 담배제품 진열 및 담배자판기 금지 계획 발표 (2017년 7월)
	스웨덴	• 2005년 술집, 식당 등 실내 금연 • 2019년 흡연금지법 확대 시행 - 옥외흡연 금지법 발효: 역사 내 플랫폼, 버스정류장,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 등 흡연 전면금지
중동	이스라엘	• 담배제품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광고 금지 법안 통과(2017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흡연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정책제시 (2009년)
	바레인	• 공공장소, 공공건물, 교통수단, 민간건물 등 흡연금지 등 강력한 금연법 실시 (2009년)
중남미	브라질	• 실내공간 전면 금연구역 확대, 담배제품 광고 및 판매점 진열 금지 및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의 담배규제법 신설(2014년 12월) •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제품에 멘톨 포함 모든 가향물질의 사용 금지(2012년 시행)
	우루과이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최대 80%까지 부착하는 법률 시행(2012년)
아프리카	르완다	• 물 담배(Shisha) 제품의 소비, 수입 및 판매, 광고 등 일체의 행위 전면금지 (2017년 12월)
	나이지리아	• 18세 미만의 담배 판매 금지 등 담배규제법 9가지 규정 발표(2017년 6월)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3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1) 금연정책 시작

-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됨
-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시행 등 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 등 포괄적인 금연정책 추진
-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및 시행(2년마다 교체)
- 2019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발표
- 2021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도 포함

2) 가격정책 추진결과

연 도	건강증진부담금	관련규정	시행일 (개정일)
1997	컬련 1갑당 2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97.5.1
2002	컬련 1갑당 2원 → 150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02.2.1 ('02.01.19)
2004	컬련 1갑당 150원 → 354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04.12.30
2011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11.12.08 ('11.06.07)
2014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엽컬련: 1그램당 36.1원 각련: 1그램당 12.7원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물담배: 1그램당 442원 머금은 담배: 1그램당 22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14.7.21 ('14.5.20)

연 도	건강증진부담금	관련규정	시행일 (개정일)
2015	쉼련 : 354원 → 841원 전자담배 : 221원 → 525원 파이프담배 : 12.7원 → 30.2원 엽쉼련 : 36.1원 → 85.8원 각쉼련 : 12.7원 → 30.2원 씽는 담배 : 14.5원 → 34.4원 냄새 맡는 담배 : 9원 → 21.4원 물담배 : 442원 → 1050.1원 머금은 담배 : 225원 → 534.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15.1.1 ('14.12.23)
2017	쉼련형 전자담배 : 438원(73원/1g) → 750원(20개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17.12.30 ('17.12.30)
2021	담배유사제품(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1ml당 52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21.8.1 ('21.6.29)

※ 쉼련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

4,500원 기준(단위: 원)

구 분		담뱃값 4,500원	근 거
조 세 및 부 담 금	소 계	3,318 (73.7%)	
	건강증진기금	841 (18.7%)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소비세	1,007 (22.4%)	지방세법 제52조
	지방교육세	443 (9.8%)	지방세법 제151조
	개별소비세	594 (13.2%)	개별소비세법 제1조
	폐기물부담금	24 (0.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409 (9.1%)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1,182 (26.3%)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3) 비가격정책 추진경과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작됨
-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민영화되었고,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 가격 인상이 진행됨
- 20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
-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
-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
-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금연분야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주요중점과제로 채택됨
- 2006년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설전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담뱃갑 포장지 경고 문구 등 광고규제 강화
- 2012년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 담뱃갑의 경고 문구 강화 및 가향물질 표시 금지
- 2013년 음식점(면적 150㎡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시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불법거래근절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
- 2014년 음식점(면적 100㎡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시행('13년 하반기 유예기간 종료)금연구역 지도 관리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 2015년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흡연석 모두 폐지(흡연실만 운영가능)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면적 확대 30%→50%)
- 2016년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제도 시행 (2016.9.3.)

- 2017년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제도 시행(2017.6.3. 시행)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2017.12.3. 시행)
- 2018년 흡연카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 적용(2018.7.1. 시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 지정(2018.12. 31. 시행)
- 2019년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2019.1.1. 시행)
- 2020년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2020.3.17.시행),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2020.3.17.시행),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2020.6.4. 시행),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 정
- 2021년 금연지도원 지원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021.12.개설), 금연지도
원 직무범위 확대(2021.12.시행)
- 2022년 금연지도·단속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최초 시행('22.8월), 금연지도·단속 우수
사례 최초 선정 및 사례집 배포('22.12. 배포)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주요 비가격정책 추진내용 및 관련규정

연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시행일
1986	•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제29조	1987.4.1
		담배전매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1987.3.26
		담배전매법 시행규칙 제14조	1988.7.4
1995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금연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 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정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995.9.1
2002	•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2003.1.1
2003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	-
	• 금연구역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2003.4.1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2003.7.2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2004.7.29
2005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	2005.5.16
2007	•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2008.12.15
2009	• 군 면세담배 폐지	-	-
2010	•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권한 부여(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2010.8.28
2011	• 담배광고 제한 강화(60회→10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2011.12.8
	• 경고문구 강화, 가향물질 표시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9조의3	
	•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2	• 고속도로 휴게시설 금연구역 추가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2012.12.8
2013	•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서명	WHO·FCTC 제15조	2013.1.10
2014	•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2014.7.29
	• 면적 100㎡ 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2013.1.1
	• 전자담배 등 경고문구 내용, 방법, 형태 별도 규정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2014.11.21

연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시행일
2015	• 담뱃갑에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사업법 제25조의5	2015.1.22
	• 화재안전(저발화성) 담배 도입	담배사업법 제11조의 5	2015.7.22
	• 금연구역 모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 (흡연석 폐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2015.1.1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2016.12.23
2016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6.9.3
	•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기 의무화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2017.3.3
	• 담배모양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청소년보호법 제2조	2017.6.21
	•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7.12.3
2017	•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제도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7.6.3
2018	•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8.7.1
	•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8.12.31
2019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9.1.1.
2020	•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5]	2020.3.17.
	•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2020.3.17.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2020.6.4.
	•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 제정	-	-
2021	• 금연지도원 지원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5제1항제2호	2021.12.
	• 금연지도원 직무범위 확대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상태 확인 업무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5제2항	2021.12.
2022	• 금연지도·단속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최초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5제4항	2022.8.
	• 금연지도·단속 우수사례 최초 선정 및 사례집 배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5제4항	2022.12.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확대 경과

		1995	1999	2003	2006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대형 건물	가	3천m제곱 미터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 미터 이상 복합 건축물	3천제곱 미터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 미터 이상 복합 건축물	3천제곱 미터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제곱 미터 이상 복합 건축물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 물, 공장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 물, 공장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 물, 공장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 물, 공장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 물, 공장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복합 용도건축 물, 공장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나	-	-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실 내작업장	-	-	-	-	-	-	-
2. 공연장	가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300석 이상
	나	-	-	객석·관람객 대기실· 사무실	객석·관람객 대기실· 사무실	-	-	-	-	-	-	-
3. 학원	가	1천 제곱 미터 이상	1천 제곱 미터 이상	1천 제곱 미터 이상	1천 제곱 미터 이상	1천 제곱 미터이상의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1천 제곱 미터이상의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1천 제곱 미터이상의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1천 제곱 미터이상의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1천 제곱 미터이상의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1천 제곱 미터이상의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1천 제곱 미터이상의 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나	-	-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	-	-	-	-	-	-
4. 대규모 점포	가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나	지하도 상품 판매매장	지하도 상품 판매매장	지하도 상품 매장 및 통로	지하도 상품 매장 및 통로	-	-	-	-	-	-	-
5. 관광 숙박 업소	가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관광숙박 업소
	나	-	-	현관, 로비	현관, 로비	-	-	-	-	-	-	-
6. 혼인 예식장	가	혼인 예식장	-	-	-	-	-	-	-	-	-	-
	나	-	-	-	-	-	-	-	-	-	-	-

		1995	1999	2003	2006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7. 학교	가	-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유아 교육법,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 교육법,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 교육법,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 교육법,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 교육법,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 교육법,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 교육법,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운동장 포함 모든 구역)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나	-	-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 전체/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사 전체/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	-	-	-	-	-	-
8. 체육 시설	가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나	-	-	관람석, 통로	관람석, 통로	-	-	-	-	-	-	-
9. 의료 기관	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나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의료 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전체	의료 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전체	-	-	-	-	-	-	-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1995	1999	2003	2006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 사회 복지 시설	가	사회복지 시설(노인 복지시설 제외)	사회복지 시설(노인 복지시설 제외)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나	서비스 제공 지역	서비스 제공 지역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	-	-	-	-	-
11. 교통 시설 관련	가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나	차량내부, 지하역사	차량내부, 지하역사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	-	-	-	-	-	-
12. 목욕장	가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나	-	-	탈의실, 목욕탕 내부	탈의실, 목욕탕 내부	-	-	-	-	-	-	-
13. 게임, PC방	가	-	-	게임제공 업소, 멀티 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제공 업소	게임제공 업소, 멀티 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제공 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일반 게임제공 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 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일반 게임제공 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 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일반 게임제공 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 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일반 게임제공 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 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일반 게임제공 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 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일반 게임제공 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 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일반 게임제공 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 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	-	-	-	-	-
14. 대형 음식점	가	-	-	150제곱 미터 이상의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150제곱 미터 이상의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150제곱 미터 이상의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100제곱 미터 이상의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모든 음식점	모든 음식점	모든 음식점	모든 음식점, 흡연카페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소)	모든 음식점, 실내휴게 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 자동판매 기 영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	-	-	-	-	-

		1995	1999	2003	2006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 만화방	가	-	-	만화대여 업소	만화대여 업소	만화대여 업소	만화대여 업소	만화대여 업소	만화대여 업소	만화대여 업소	만화대여 업소	만화대여 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	-	-	-	-	-
16. 청사	가	-	-	1천제곱 미터 이상의 청사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국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나	-	-	청사의 사무실, 민원 대기실	청사의 사무실, 민원 대기실	-	-	-	-	-	-	-
17. 보육시설		-	-	보육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18. 청소년 시설		-	-	-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 시설 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 시설 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 시설 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 시설 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 시설 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 시설 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이용 시설 등
19. 도서관		-	-	-	-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20. 어린이시설		-	-	-	-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21. 휴게소		-	-	-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1995	1999	2003	2006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타 공동 금연구역	승강장	승강장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	-	-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 베이터 및 지하주차 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 신청 시 금연구역 으로 지정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 베이터 및 지하주차 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 신청 시 금연구역 으로 지정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 베이터 및 지하주차 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 신청 시 금연구역 으로 지정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으로부터 10m이내 구역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 베이터 및 지하주차 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 신청 시 금연구역 으로 지정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으로부터 10m이내 구역

※ 가. 구체적인 대상 시설의 기준
나. 절대 금연구역

4 지역사회 금연정책 추진방향



1) 목적

- 비흡연자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조성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2) 목표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 25.0%, 성인여성흡연율 4.0%까지 감소(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흡연경고그림, 금연구역 확대,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등 흡연규제 강화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피해 예방

1부 국가금연정책 개요

3) 추진전략

● (금연정책) 근거 중심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 흡연의 원인, 금연실패 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금연정책 추진
-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 (흡연예방 및 치료)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흡연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강화

-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영유아에서부터 본인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장기 흡연자까지 다양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대상별 맞춤형 흡연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및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

● (비흡연자 보호) 금연환경 조성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

- 금연구역에 대한 단계적 확대 추진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흡연행태 개선

4)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2019)

●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비전〉
◇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

〈중점 추진 방향〉
◇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 껌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①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①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②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③ 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 의무화, 동물·만화 캐릭터 담배 광고 사용 금지 및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 강화 ④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도입 ⑤ 담배판촉행위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⑥ 미디어 內 흡연장면 노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 적극 대응
② 담배 등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①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②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관리 강화 ③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의무화 및 공개
③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차단	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②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가능구역 분리 지정
④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① 아동·청소년 및 청년 흡연예방교육 강화 ② 흡연자의 금연치료 적극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③ 금연치료 건강보험급여 검토
⑤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①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추진체계 마련 ②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및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전국 260개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행동요법 및 필요시 니코틴보조제 지급) 및 기업, 학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을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

2) 추진경과

● 보건소 금연클리닉

- 2004년: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2005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시작
- 2019년: 256개 보건소에서 약 36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2020년: 256개 보건소에서 약 16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2021년: 258개 보건소에서 약 15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2022년: 258개 보건소에서 약 15만 명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보건소 방역대응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이용자 감소

● 금연환경조성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금연구역 지정)
- 2003년: 금연구역 강화시작(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 2010년: 지자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2012년: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행
- 2014년: 금연지도원 제도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2015년: 모든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흡연석 폐지(흡연실만 운영가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2016년: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에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 및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17.12.3. 시행)
- 2017년: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제도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17.6.3. 시행),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확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17.12.3. 시행)
- 2018년: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 적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18.7.1. 시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18.12.31. 시행)
- 2019년: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2019.1.1. 시행)
- 2020년: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2020.3.17.시행),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2020.3.17.시행),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2020.6.4. 시행),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 제정
- 2021년: 금연지도원 지원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1.12. 개설), 금연지도원 직무범위 확대 ('21.12. 시행)
- 2022년: 금연지도·단속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최초 시행('22.8. 시행), 금연지도·단속 우수사례 최초 선정 및 사례집 배포('22.12. 배포)

3) 수행기관

- 시·도청, 시·군·구 보건소

4) 사업 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

-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6개월 9차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및 CO측정
 - 필요한 경우 니코틴 보조제 제공
 - 6개월 성공 후 추가 6개월간 추서관리 실시

●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규제정책)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금연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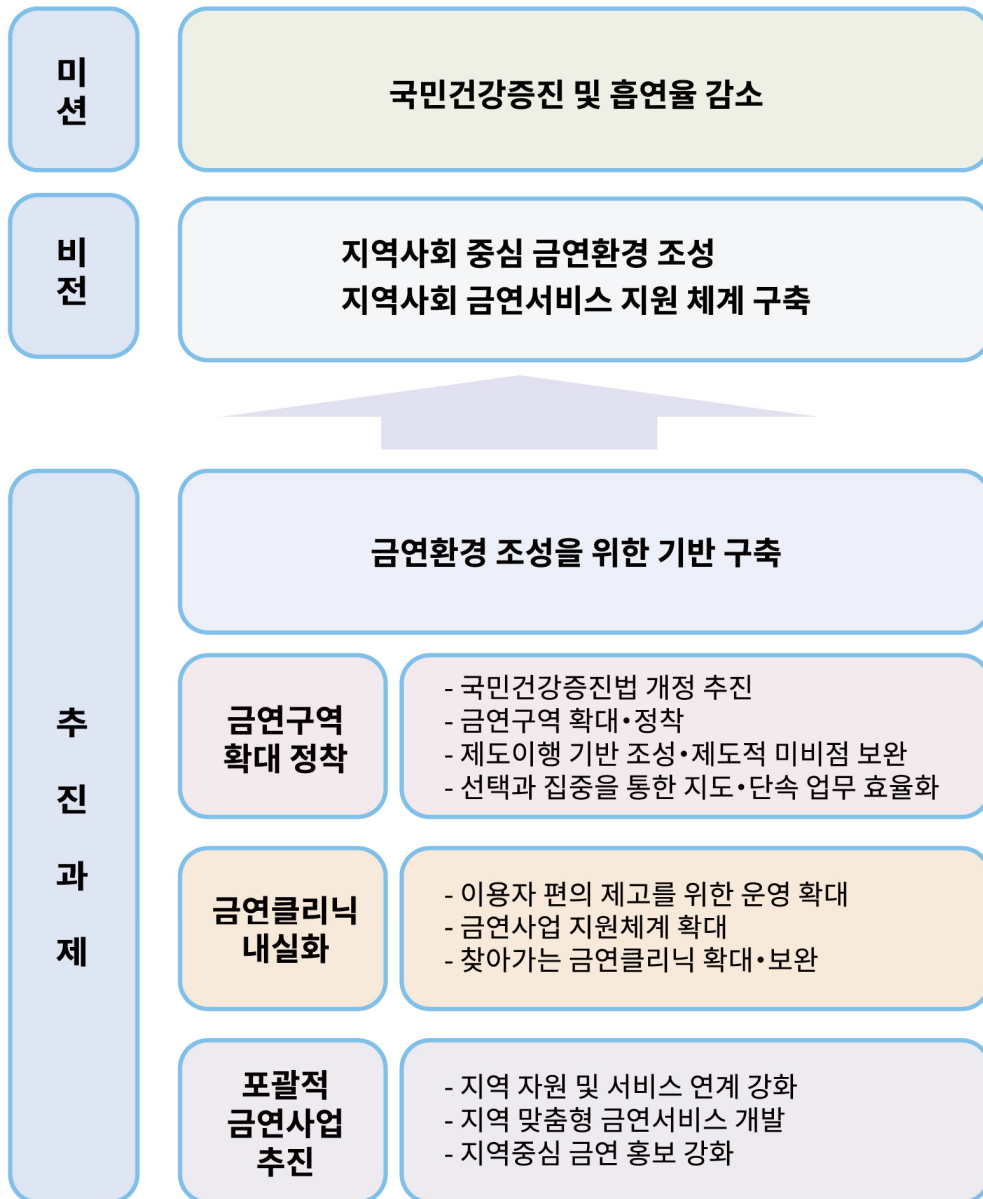
● 금연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조를 통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사업 홍보물 제작 시 홍보물에 나타나는 인물의 성별 비율과 여성 흡연에 대한 위험성 등을 포함할 것

5)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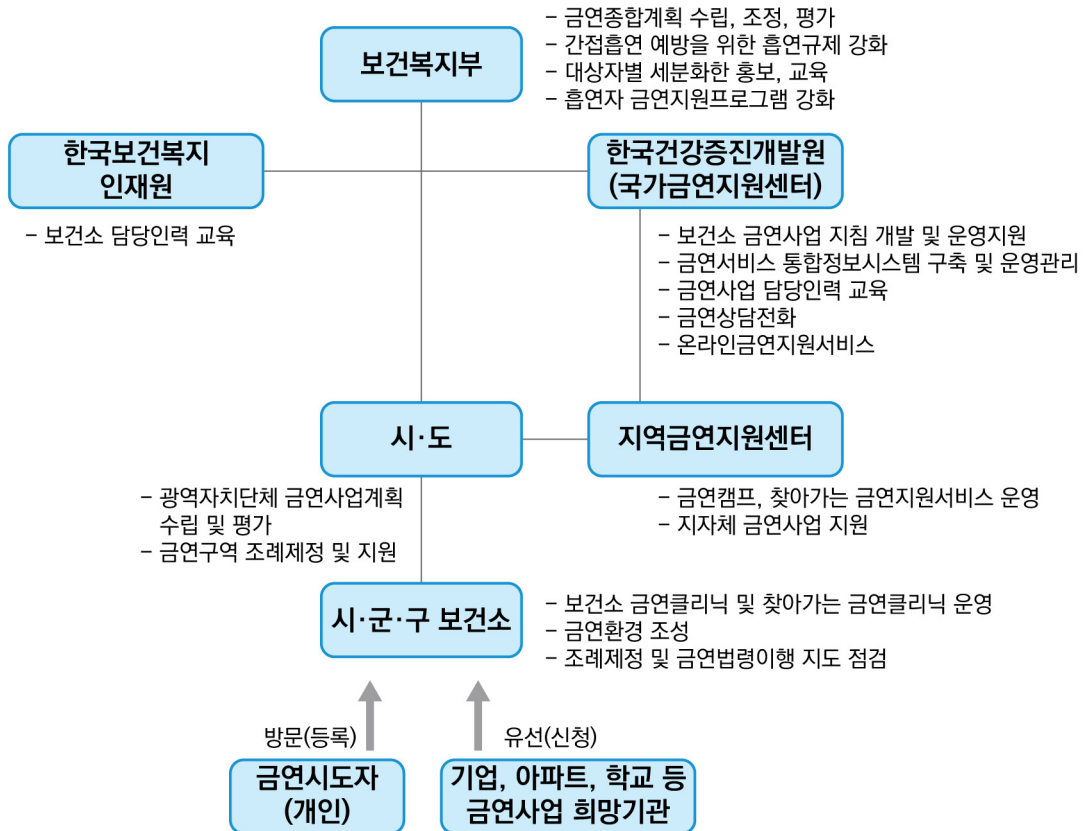
-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
- 지역사회 금연관련 단체 및 전문가
- 지역사회 금연시설 관리자, 담배소매인 등 관련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추진전략



2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도



2) 기관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평가
- 중앙단위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추진
 - 가격정책, 비가격규제정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 등 수행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등 자치단체 금연사업의 지원 및 평가
- 금연지원서비스 등 위탁 운영 및 관리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나) 광역자치단체

- 시·도별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 시·도 금연조례 제·개정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 군·구별 금연사업 지원 및 평가
- 시·도 내 금연환경 조성 관리
- 자체 사업 및 홍보 추진

다) 시·군·구(보건소)

- 시·군·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시·군·구별 금연조례 제·개정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관리(금연법령이행 지도 및 점검)
-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 관리
- 지역사회 내 금연교육 및 교육자료 확산

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

- 국가 금연사업 지원
-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추진 매뉴얼 등 지침 개발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보건소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 보건소 금연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 금연사업 및 금연상담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금연사업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원

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 교육 및 자료개발
-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금연상담사의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시행

바) 지역금연지원센터

- 금연캠프 운영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지자체 금연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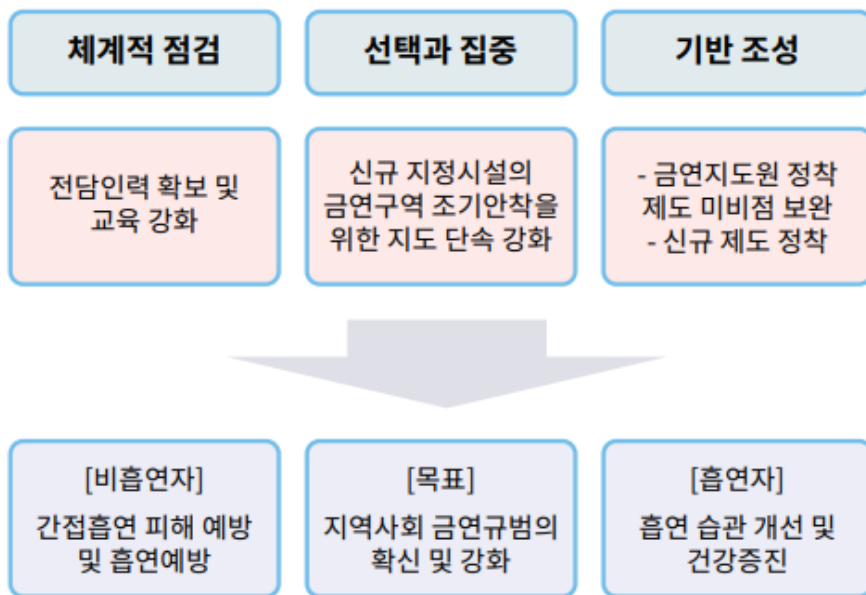
II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1 금연 환경조성

1) 금연구역 확대 정착(지도점검 강화)

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추진방향



나) 세부 업무내용

-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연구역 지정·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지정 등
- 법령 이행에 대한 점검실시 및 체계 구축
 -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자 지도 단속
 - 담배자판기 및 성인인증장치 설치, 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 점검 등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다) 금연 환경 조성 전담인력 확보

- 금연구역 관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채용
 -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발(단, 사업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 2015년 채용된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한해 가능
 - 금연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자격기준에 준하여 선발

2) 포괄적 금연사업 추진

가) 지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자원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내 전문가 자원 및 유사분야 자원 연계 강화
 - * 해당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으로 연계 강화
 - 필요시 상시적 협의체 구성 운영 권장
 - *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연사업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홍보, 캠페인, 여론 조성 등의 업무 수행
-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간담회 분기 1회 개최(시·도)
 - 학교와 연계를 통한 금연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
 - 흡연청소년 대상 금연상담 지원
- 금연 지지그룹 및 전문가 풀 구축·운영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지역자원 연계 활용 예

구 분	연계기관	연계내용
유관기관	관내 지역금연지원센터	지역별 금연사업 소통·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체	근로자 건강센터(1577-6497) 산업보건전문요원(대규모 사업장)	기업 내 금연 환경 조성 컨설팅 금연관련 교육, 필요물품 지원
여성·가족	여성 상담 센터(02-953-2017) 가족 지원 센터	여성금연 지원 가정 내 흡연예방
학교·청소년	청소년 상담 센터(117) 교육복지지원사업(교육청)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치료 지원
마을·아파트	동장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사회 대표 모임	생활터 내 금연 분위기 조성

* 지역 내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협의 추진

나) 지역사회 홍보 강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한 홍보강화(반상회보, e-mail, 읍면동장 회의 등)
- 지역자원과 합동 캠페인 및 금연을 상징할 수 있는 구역·지정 또는 이미지를 마련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
- 지역 미디어 및 전광판 적극 활용 홍보
- 금연구역 확대시행, 세계금연의 날 등 적절한 시기에 맞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 (보건복지부 홍보계획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사업 홍보물 제작 시 홍보물에 나타나는 인물의 성별 비율과 여성 흡연에 대한 위험성 등을 포함할 것
- 노담캐릭터, 금연홍보 및 캠페인 홍보물 가이드 적극 활용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홍보'에서 확인 가능

다) 지역 맞춤형 금연사업 개발·운영

- 자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자율 금연 업소, 아파트 선정 및 홍보
 - 자율 참여 업소에 대한 MOU 추진 등

●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연계 기능 강화

※ 지역금연지원센터(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 금연 교육 우수 강사 인력 풀 구축·운영

●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 (목적) 제도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 (기관) 시·도청 및 시군구 보건소
- (분야) 기반조성, 금연구역 단속 및 갈등관리, 자율적 참여, 자원 연계·협력 및 성과관리, 기타 부문별 사례 등
- (대상) 당해 연도 사업 또는 중장기 사업(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지속된 사업)

※ (예시) 걷기와 담배꽁초 줄기 연계, 노령근로와 담배꽁초 줄기 연계

2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 운영 개요

가) 목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나) 목표

- 지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시도 증가(등록률 및 결심률)
-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실천 증가(4주, 6개월 금연성공률)

다) 수행주체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보건소 하부기관
 - ※ 금연상담사 배치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필요
 - ※ 지자체 보건기관 설치 여건에 따라 운영

라) 대상자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외국인 포함)
 - ※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추진전략)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 금연실패자 적극 발굴 및 재등록 촉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등 효율적 추진
-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위기청소년, 여성, 대학생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와 사전 협의 및 조정 또는 효과적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 필요
- * 금연시도자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이력관리를 위해 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필요

마) 서비스 제공내용

-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금연 홍보 물품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바) 서비스 관리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관리
 - 대상자 등록, 서비스제공 관리, 금연성공 평가
 - ※ 비대면 상담으로 등록 가능(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메일, 우편 등으로 전송하여 서명본 수령 및 보관 필수)
 - ※ 흡연여부 판정을 위한 코티닌 측정키트 우편 발송 및 결과 확인
- 지역사회 이용자 특성에 따라 필요시 야간 및 주말 운영을 통한 접근성 강화
 - ※ 단, 안전한 상담 환경 조성 및 업무 연장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여건 마련
 -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 선정 시 적극 반영 예정(접근성 강화 방안 및 상담사 근무환경개선 등)

사) 담당인력

- 금연클리닉 의사
 - 보건소 의사 중 1인 이상을 금연클리닉 담당의사로 지정하여 총괄 책임
 - 흡연자 진료 및 니코틴 보조제 처방
- 금연상담사(청소년 전담인력 1인 지정)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제공 및 평가
 -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운영 등
 - 보건소 금연사업계획에 따른 금연캠페인 및 교육 실시

아) 금연클리닉 공간 설치 기본원칙

- 통풍 등 환기가 잘 되는 공간
 - ※ 금연클리닉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 가능(구입 불가)
- 타인에 노출되지 않는 내담자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공간(상담사 안전이 보장된 환경 조성)
 - ※ 지자체 금연클리닉 환경에 따라 파티션 등 설치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실적추이

연도	등록자	금연결심자 (금연결심률)	4주 성공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률)
2008	349,107명	328,408명 (94.1%)	253,653명 (78.7%)	133,478명 (46.5%)
2009	379,233명	356,426명 (93.9%)	277,846명 (78.7%)	154,758명 (44.0%)
2010	401,136명	369,385명 (99.7%)	289,397명 (81.2%)	157,300명 (49.2%)
2011	362,000명	326,338명 (98.9%)	267,899명 (83.4%)	171,051명 (54.6%)
2012	427,571명	417,272명 (97.6%)	373,037명 (91.3%)	237,200명 (65.3%)
2013	404,163명	398,741명 (98.7%)	356,399명 (87.7%)	255,262명 (60.5%)
2014	439,971명	434,387명 (98.7%)	299,800명 (76.4%)	162,635명 (49.2%)
2015	574,108명	556,570명 (98.4%)	425,706명 (73.8%)	269,345명 (44.8%)
2016	411,677명	398,049명 (96.7%)	283,516명 (71.7%)	155,626명 (41.7%)
2017	424,636명	410,050명 (96.6%)	292,523명 (70.8%)	157,860명 (38.5%)
2018	368,274명	360,180명 (97.8%)	245,108명 (69.2%)	126,525명 (37.1%)
2019	358,966명	351,784명 (98.0%)	259,846명 (73.3%)	120,710명 (35.1%)
2020	165,482명	164,905명 (99.7%)	129,314명 (73.4%)	71,745명 (31.4%)
2021	146,611명	145,434명 (99.2%)	102,928명 (73%)	47,639명 (33.2%)
2022	154,702명	152,488명 (98.6%)	106,770명 (70.6%)	44,885 (33.0%)

※ 자료원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상담목표	회차	상담일정	상담내용	상담주기
금연성공	-	등록, 시작전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금연클리닉 등록 및 평가(흡연자평가, 금연계 획담기, 금연방법선택) - 금연상담 결심일 지정(등록후 2주 이내)	〈등록~6주〉 대면상담: 3회이상 전화상담: 2회이상
	1차	금연시작 (1일)	-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2차	금연 1주 (7일)	- 금연유지 확인 -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3차	금연 2주 (14일)	- 금연유지 확인 -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4차	금연 4주 (28일)	4주 금연성공확인(CO 또는 코티닌 측정) - 약물요법의 금연성과 평가	
	5차	금연 6주 (42일)	6주 금연성공확인 - 재흡연 예방상담 - 정보시스템에 6주 성공기록	
재흡연 예방	6차	금연 8주 (56일)	- 금연유지확인 - 흡연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 내부의 적 극복하기 - 정보시스템에 상담기록	〈7~12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7차	금연 12주 (3개월, 84일)	12주 금연성공확인 - 금연 성공 시 홍보물품 제공 가능 - 금연 후 변화인지 -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12주 성공기록	
금연유지	8차~ 9차	금연 24주 (6개월, 168일)	24주 금연성공확인 (CO 또는 코티닌 측정) - 수료식, 금연성공기념품제공 -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24주 성공기록	〈13~24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추구관리	추구 관리	금연 24주 이후 12개월 까지	- 금연유지 확인 -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에 상담 기록	대면, 전화, SMS 이메일 등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상담 기록하며, 금연유지평가(4,6,12,24주) 시 금연동기 및 자신감을 체크하여야 함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가) 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
- 상담방법 : 대면(내소, 출장), 비대면(전화, 영상), 기타
- 각 상담차수에 따라 대면상담 회차를 준수함(대면상담 시 CO 또는 코티닌, 혈압 측정 필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나 영상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기타 상담) 대상자와 전화 연결되지 않았을 시, SMS, SNS, E-mail로 정보제공 시
- 상담강도 : 1회 10분 이상, 9회 이상 상담 실시(대면상담 5회 이상 포함)
※ 관련 내용 연구 결과,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아짐(서은선 외 5명, 2020), (김희진 외 1명, 2021) 등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E-mail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 등록 및 상담은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 금연클리닉 등록(1차 상담)

- 지역주민 중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등록
- 혈압, 신장, 체중, 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검사 등 측정
- 음주문제 및 운동습관, 흡연력, 금기증 여부 등 평가
- 금연동기 파악 및 흡연자 평가
- 금연의지 확인 및 구체적인 금연방법 결정
- 단, 1차 상담 시 등록자의 금연의지에 따라 등록 당일 2차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총괄하에 금연보조제 제공 가능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설명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등록카드는 작성 후 3년간 보관
 - 전산등록
※ 전산등록 되지 않은 경우(별도 서면관리 등), 실적인정 어려우므로 주의

• 금연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금연시작일~6개월)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 9차 상담 기준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9회 이상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일정은 대상자에 따라 조정 가능
- 상담내용 :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금연보조제 부작용 확인 및 사용법 설명,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 추구관리(금연시작 6개월~금연시작 12개월)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계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반복 실패자, 금연 성공 후 흡연 지속자, 금연클리닉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흡연자 등의 경우, 병의원 금연치료사업 및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 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적극 연계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우수사례 선정 시 적극 반영 예정

- 금연시도자 지역자원 연계 방안(안)

구분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대상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금연시도자	• 니코틴 중독이 심한 흡연자 또는 반복 재흡연하는 금연시도자
추진 내용	• 금연상담, 금연치료	• 금연상담, 건강검진, 심리치료, 행동치료, 금연치료 등
연계 방법	• (접수) 내소자 상담 → (사정) 니코틴 의존도 등 파악(중증) → 금연캠프 연계	• (접수) 내소자 상담 → (사정) 니코틴 의존도 등 파악(경증) →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 금연상담사 감정노동 건강장해 보호조치 마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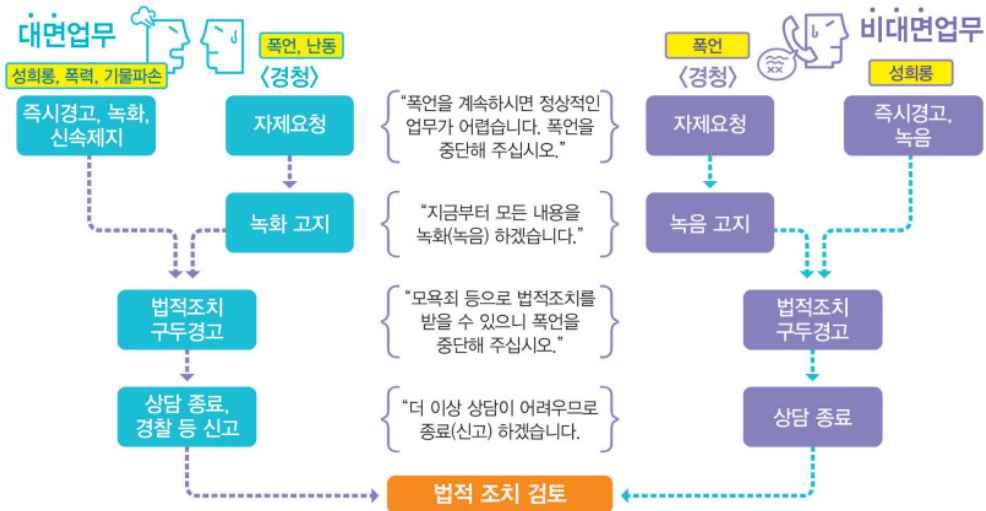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 [제목개정 2021. 4. 13.]

- 금연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상담사 보호를 위한 자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담자의 폭언(욕설, 헐박, 모욕)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폭언(욕설, 협박, 모욕) 등의 강성 민원 상담에 대한 단계별 대처요령



출처 : 고용노동부

- 상담실 출입문, 상담테이블 등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안내문을 게시하고 비대면 상담(전화 등) 시 통화 연결음에 상담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멘트를 송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문구 내용(예시)



출처 : 고용노동부

나) 니코틴보조제 제공

● 종류 :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 제공량

-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상담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외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및 니코틴 보조제 사용량 우선 확인

※ 대상자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금연치료 약제를 처방받는 경우, 니코틴보조제 지급 제한(보조제 지급 전 반드시 금연치료여부를 확인) *주 1회 시스템 연계 중

-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3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보조제 지급은 상담을 위한 보조적 수단임

- 1일 기준 보조제 지급 수량

구분	1일 기준 수량	비고
니코틴 패치	1매	1회 지급 시 최대 21일분 가능
니코틴 껌	15개	
니코틴 캔디	25개	

※ 대상자의 흡연양 등에 따라 니코틴함량을 달리하여 제공

● 재등록자의 보조제 제공량

- 재등록자의 보조제 지급 내역은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기록 되며, 이를 근거로 연간 보조제 지급량 제한

- 신규등록, 재등록에 관계없이 대상자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지급

※ 마지막으로 보조제를 지급한 날짜와 관계없이, 연간 12주 이내 지급 가능

니코틴보조제 초과 지급 부정사례(감사원 감사 결과)

* 초과지급 현황

- 2015.1.1.~2018.6.30. 보건소별 금연클리닉 참여자에 대한 니코틴 패치 적정 지급 여부 분석 결과 총 202개 보건소에서 총 2,168명에게 51,871장의 니코틴패치 초과 지급함

* 부정지급 사례

- (A 보건소) 임의로 참여자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계정을 이용, 니코틴패치 84장을 이미 지급받은 참여자들이 추가로 니코틴패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정으로 총 20명에게 최소 7장에서 최대 21장까지 총 251장을 지급
- (B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참여한 자의 패치 지급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총 98장의 패치를 지급
- (C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총 105장의 패치 지급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제공대상

- 반드시 현재 흡연자에 한하여 제공
- 최초 등록 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가 4점 이상 흡연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 니코틴의존도 평가점수에 따른 제공대상 선정기준

니코틴의존도 검사	금연보조제	비 고
0 ~ 3점	미 제 공	
4 ~ 6점	흡연자 선택	1회 지급 시 최대 21일분 내에서 탄력적 지급
7 ~ 10점	흡연자 선택	

※ 단, 과거 병력이 있거나 금연보조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높더라도 의사 상담을 거쳐 니코틴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보조제 및 제품 별 용법 및 용량

※ 세부사항 니코틴보조제 이용방법 가이드라인 참고

니코틴 보조제 및 제품 별 용법 및 용량

* 니코틴패치 용량 가이드라인

- 사용 기간 : ㉠ 3개월 이하 / ㉡ 6개월 이하

단계	기준	사용기준(예시)	
1단계	하루 20개비 이상	㉠	30(4주) → 20(4주) → 10(4주)
		㉡	25(8주) → 15(2주) → 10(2주)
2단계	하루 20개비 미만	㉠	20(8주) → 10(4주)
		㉡	15(8주) → 10(4주)

※ ㉠ 니코스탑, 니코틴엘, 엑소덤, 니코프리, 니코패치 ㉡ 니코레트인비지, 니코에이

※ 제조사별 니코틴 용량이 다르므로 처방 전 확인 필요

- 사용 방법 : 1일 1회 1매 털이 없는 신체 부분에 **매일 부착 부위 변경하여 부착**

* ㉠ 24시간 사용, ㉡ 16시간 사용

- 부작용 발생 시 대처 : 빈맥, 두근거림, 어지러움, 식은땀, 구역, 구토, 혈압 변화, 호흡곤란 등 **부작용 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진료 권고**

* 니코틴껌 용량 가이드라인

- 사용 기간 : 6개월 이하

단계	기준	사용기준(예시)
1단계	하루 20개비 이상	4mg 흡연충동 시 사용(통상적으로 하루 8~12개 사용, 최대 15개 미만)
2단계	하루 20개비 미만	2mg 흡연충동 시 사용(통상적으로 하루 8~12개 사용, 최대 15개 미만)

※ 제조사별 니코틴 용량이 다르므로 처방 전 확인 필요

- 사용 방법 : **흡연충동이 있을 때 쉬어가며 씹기 방법에 따라 천천히 씹기**

- ① 니코틴껌 1개를 입 안에 넣고 수초 간격으로 천천히 씹는다.
- ② 강한 맛이나 약간의 얼얼한 느낌이 느껴질 때까지 씹은 후 강한 맛이나 얼얼한 느낌이 진정될 때까지 껌을 잠시 볼에 붙인다.
※ 불쾌한 맛이 느껴질 수 있으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15분 동안 물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 ③ 다시 천천히 껌을 씹고, 위와 같이 반복한다.
- ④ 이와 같은 방법으로 30분간 계속 씹는다.(30분 사용 후 제거)
- ⑤ 껌의 맛에 익숙해지면, 필요에 따라 씹는 속도를 증가시킨다.

- 부작용 발생 시 대처 : 빈맥, 두근거림, 어지러움, 식은땀, 구역, 구토, 혈압 변화, 호흡곤란 등 **부작용 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진료 권고**

* 니코틴 사탕 용량 가이드라인

-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단계	기준	사용기준(예시)
1단계	초기 3개월	초기 1정을 매 1~2시간 간격 복용
2단계	3개월 이후	단계적으로 복용량 감소 → 약 복용량 1일 1~2정 감소 시 중단

※ 제조사별 니코틴 용량이 다르므로 처방 전 확인 필요

- 사용 방법 : **흡연충동을 느낄 때 씹거나 삼키지 말고 입 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복용**

- ① 1정을 입안에 넣고 강한 맛이 느껴질 때까지 빨다.
- ② 이후 잇몸과 볼 사이에 두었다가 맛이 약해지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빨도록 한다. 빨아서 복용하는 방법은 각 개인에 적합하게 맞추고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이 약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천천히 빨아서 복용한다.(약 30분)
※ 불쾌한 맛이 느껴질 수 있으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15분 동안 물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 부작용 발생 시 대처 : 빈맥, 두근거림, 어지러움, 식은땀, 구역, 구토, 혈압 변화, 호흡곤란 등 **부작용 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진료 권고**

●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

- 절대적 금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최근 시작된 중풍,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니코틴 알레르기, 임신, 수유 중, 만 18세 이하의 지급하지 않음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니코틴 보조제의 지급을 제한하는 대신 금연의 동기부여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홍보물품(축구공, 농구공, 줄넘기 등) 추가 지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것보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금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니코틴패치에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다른 회사 제품의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니코틴껌 또는 사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함
- 빈맥, 두근거림, 어지러움, 식은땀, 구역, 구토, 혈압 변화, 호흡곤란, 피부반응 등 부작용 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진료 받도록 안내

● 금연보조제 제공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

금연보조제 제공시 정보제공 내용

-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등)는 금연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입니다.
- *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유통판매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 *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보존을 위해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적절히 폐기 될 수 있도록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에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금연 홍보 물품

● 금연클리닉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제공 가능

- ※ 예시: 운동 및 건강관련 물품을 권장함(축구공, 줄넘기, 지압봉 등)
-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고 관리 필수
- ※ 금연관련 홍보물품 및 행동강화용품의 경우 비대면 상담을 통한 우편 제공 가능

● 3개월 금연 성공 시 금연동기 강화 목적으로 지급 가능

● 흡연욕구저해제는 금연관련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품목에 한하여 제공가능

* 다만, 흡연욕구저해제의 유사흡연행위 중독 및 청소년 오남용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함**

※ 금연관련 의약외품 준거기준

「의약외품 범위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85호, 시행 2018.11.1.)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품목에 한하여 제공 가능

※ 금연관련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해제) 허가품목 확인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index>) 접속 → 의약품등 제품 정보 → 품목구분 “의약외품” 선택 → 분류번호 “45100” 선택(“수출용”기재 품목은 허가품목에서 제외)

● 영양보충을 위해 영양상담 및 식사교육 연계하며, 영양보조제 제공은 지양

● 아로마파이프 등 궤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제공 지양

* 궤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재평가 결과(금연보조효과 삭제) 반영(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30(2022.11.29.)호)

라)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 제공 가능

●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CO 또는 코티닌 측정 확인 후 제공 가능

* 전자담배 등(궤련형 전자담배 포함) CO측정으로 금연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상자가 감염 우려 등으로 CO 측정을 원치 않는 경우는 코티닌 검사 시행

- 6개월 금연성공품 지급 CO 측정기준 : 10ppm이하(성인), 6ppm이하(만 18세 이하 청소년)

- 코티닌 측정 시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코티닌 검출 여부 확인

*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시 건강관련 물품 지급 권장(예: 목안마기, 전동칫솔, 체중계, 혈압계, 구급함 등)

* 동일 대상자에게 기념품 반복 지급 불가

3)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가

가) 종결처리

● 정상종결

- 9차 상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시작일로부터 6개월(24주) 동안 금연에 성공한 경우

- 종결 이후 추가 6개월 추서관리 또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 연계 유도

● 중간종결

-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본인이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로 타 지역으로 이사, 질병 및 사망, 금연거부, 금연실패 등의 사유로 중간종결

- 마지막 상담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대상자 중, 최소 3주간 주 1회 이상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연락두절 사유로 중간종결

※ 중간종결 후 재등록을 원할 경우 필요한 금연서비스를 지원: 재등록자의 보조제지급은 p.49(재등록자의 보조제 제공량) 참조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나) 서비스 종결 평가방법

- 4주와 6개월에 금연결심일로부터 성공여부를 확인함
 - 4주 금연성공은 금연상담 시작 후 현재(4주)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 6개월 금연성공은 금연상담 시작 후 현재(6개월)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 (6개월 금연유지 평가) 금연결심 후 161일부터 228일(6개월 평가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시행
 - ※ 이동금연클리닉 일정 등을 고려하여 6개월(168일) 기준 7일 전부터 평가 가능

다) 서비스 만족도 평가방법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예정
 - 대상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자
 - ※ 금연상담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만족도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외부 유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
 - 방법 : 전화설문조사
 - 시기 : 하반기

라) 평가결과의 반영

- 연말에 실시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

3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동 금연클리닉)

1) 개요

-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 제공 필요
-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2)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 마을, 학교, 단체의 장이 신청하거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
 - * 청소년 보호시설 등 청소년, 대학생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확대
 - *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위기 청소년, 여성, 대학생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와 중복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조정 필요
 -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금연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업 가능
- 선정 : 금연상담사 수 및 보건소와의 접근성,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결정
 - * 기업, 단체 등이 참여시 해당 단체의 지원방안을 반드시 확인

※ 지원 예시

- 금연기업 선포 및 담당자 선정
- 인사상 인센티브 또는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 성공유인을 위한 포상금 또는 물품(여행) 지급
- 학점 인정 및 별점 삭감 등 학교내 성공 포상 등

● 제공서비스

- 정기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기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신청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 가능
 - * 적어도 주1회, 3개월 이상 추진
- 대상자 등록카드 및 상담일지는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4 시도 단위 금연사업

1) 개요

-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홍보
- 지자체별로 금연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체계적인 금연사업을 지원

2) 내용

- 시·도별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 시·도 금연 사업
 - 지역중심 금연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금연지원센터를 비롯, 타 전문기관과의 협업 권장
 - 관할지역 내 시·군·구와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권장
 -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할지역 내 시·군·구의 금연사업 지원
 - 광역단위에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 ※ 대국민 홍보사업(p.113)참조
- 시·군·구별 금연사업 지원 및 평가
 - 관할지역 사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 실시
 - 정기적으로 현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현황 파악
 - 추진결과에 대하여 시·군·구에 환류하여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보고실시
- ※ 관할지역의 사업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적극 지원
- ※ 시군구비 예산 편성 등이 어려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내에서 재교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복지부에 반드시 보고)

III

행정사항

1 인력

1) 금연사업 담당자

- 지자체별 금연사업 기획 및 관리
- 유관단체 및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금연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금연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추진

2) 금연클리닉 담당의사

- 보건소 의사 중 1인 이상을 금연클리닉 담당의사로 지정
-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짐
- 금연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국민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한함), 필요한 경우 흡연자의 진료를 담당하여 니코틴보조제 처방

3) 금연상담사

-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직무	직무범위
1. 상담서비스 제공	가. 흡연의 위해 및 금연효과 설명 나. 니코틴보조제 사용방법 설명 다.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및 약물 부작용 확인 및 대처 라.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금연자신감 고취 마. 금연행동지지 및 금연관련 지식 제공 바. 금연관련 생활습관 조절 사. 금연상담 시작 이후 4주~24주 간 금연성공여부 평가 아.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상담일지 작성
2. 금연환경조성	가.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업무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자격요건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채용하되 가능한 일정 수준의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채용을 권장
- 서비스 제공내용에 맞는 자격자의 우선채용을 권장하나,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금연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로 관련 전공자로 구성해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신규 금연상담사 현장 투입 전 중앙 및 시도 금연상담 교육과정 14시간 이상 이수 권고

● 적정 인력 규모

- 상담의 질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담사 1인당 등록자 600명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

● 금연상담사 교육

수행기관	교육과정명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신규자를 위한 지역사회 금연사업 기본과정
	경력자를 위한 지역사회 금연사업 심화과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http://lms.khepi.or.kr)	통합 금연상담사 교육과정(공통, 기본, 심화, 특화)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
	금연상담지침서 활용 및 상담예시 교육(남성, 여성, 청소년)
	금연상담전문가 과정(기본, 심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사 역량강화 연수과정(신규, 경력)

4) 금연지도원 * 세부내용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참조

● 주요업무 및 직무범위

직무	직무범위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나.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다.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라.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마.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 시정명령은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가능하나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시에는 담당공무원 동행 필요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금연지도원 단독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가.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다.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5.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와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

● 자격요건 및 기준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금연지도원 교육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정책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 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가능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lms.khepi.or.kr) : 금연지도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활용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금연 관련 법령 등 교육 실시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홈페이지(inhealth.kohi.or.kr) : 금연정책및법령의이해, 흡연과태료감면제도가이드라인' 활용 가능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지자체 위임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함
-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금연지도원증,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지자체 조례 제정

● 금연지도원 적정 인력 규모

- 확대되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000개소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장

※ 국정과제 보건의료부분 일자리대책 추진과제 해당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예산운영 기본원칙

- 지역사회 금연사업은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
- 지자체는 방만한 예산집행, 예산낭비요인 등이 없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함
- 예산 집행 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 준수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령, 물품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

● 인건비는 다음의 지급기준을 따름

- 급여는 월 213만원 이상 지급(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금연지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금연상담사 처우개선(인건비, 상여금 및 초과근무 수당 등) 관련 예산 편성

※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나, 2015년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한해 인건비로 편성 및 집행 가능

※ 그 외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은 202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총괄) 안내서 참조

2) 예산 집행기준

- 예산은 국비에 대하여 지방비 50% 이상 매칭하여 구성, 지방비 추가확보 가능
 - 국비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비를 매칭하여야 하며, 시군구비 매칭이 곤란한 시군구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여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지방비 확보, 집행률 등에 따라 당년도 예산에 대해 지자체간 조정 가능
- 인력 미채용 등으로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인건비’를 ‘사업비’로 자체 전용 가능
- 금연상담사 등 사업인력에 대한 교육비와 여비 예산편성은 필수사항이며, 사업비 내에서 편성가능 함
- 본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이므로 자산취득성 집행 불가, 단, 자본보조인 시설개선사업(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도농복합시 대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원 대상인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자본보조) 예산 활용 가능

※ 예시) 금연클리닉 상담실 근무환경개선, 건강증진 장비(금연 교육용 모형들, 일산화탄소 측정기, 니코틴소변 검사기 등) 구입

※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CO측정기 구입 안내

- 일산화탄소 가스 분석을 위한 장치 구매 및 사용 시 국내 허가(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인증된 제품만 구매 사용 가능, 그러나 단순 흡연여부만 확인하기 위한 경우 비 해당
- * 일산화탄소가스분석장치 허가품목 확인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접속→정보마당→제품정보방→제품정보→품목조건“품목명”선택 - “일산화탄소”입력 후 검색

(유의) “일산화탄소”가 아닌 유사어로 품목이 등록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참조) 현재 사용하고 있는 CO측정기가 단순흡연여부확인 기기인지, 일산화탄소 가스분석 기기인지 확인(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하여 목적에 부합한 기기 사용필수(복지부 건강증진과-3919 (2020.11.19.) 문서하달 참조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금연홍보 및 단속, 방문상담 등을 위한 차량 임대 가능(구입은 불가)
- 금연클리닉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 가능(구입 불가)
- 금연성공기념품은 대상자 1인당 최대 5만원 이하로 편성
- 금연사업 추진 시 포괄적 접근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연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합서비스 제공시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 가능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캔디)·금연홍보물품 등은 적정 단가로 구매하여 예산 낭비 방지

※ 구매 품목에 대한 비교 견적 권고(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건소별 구매이력 확인 가능)

예산편성 예시

구분		편 성 기 준
금연클리닉	인건비	• 금연상담인력 인건비 • 4대 보험료(기관), 시간외, 휴일근무 수당 등
금연클리닉	재료비 (니코틴 보조제)	•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보조제 등 보조용품 구입비
금연클리닉	재료비	• CO 및 니코틴 측정기 구입비 • 금연 성공기념품 제공(1인당 5만원 이하 편성)
금연클리닉	운영비	•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 • 금연상담사 등 인력 교육비, 여비, 자원봉사 활동비 등
금연구역관리	인건비	•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등
금연구역관리	운영비	• 상해 보험 가입, 여비, 교육비 등
단체교육	재료비	
단체교육	운영비	
캠페인 및 홍보	재료비	
캠페인 및 홍보	운영비	
타기관 연계	재료비	
타기관 연계	운영비	
기타	재료비	
기타	운영비	

3 사업실적 보고

1) 사업실적 보고

가) 보고방법 및 시기

● 보고방법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보고에 입력

● 보고시기 : 매월

※ 익월 10일 이내 보고 완료

나) 보고범위

● 사업실적 현황

- 보건소 금연클리닉 실적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 보건소가 주관한 교육실시 현황

● 사업운영 현황(예산, 인력)

● 실적보고 기한 준수(월별·반기별)·빈번하게 발생하는 입력 오류 주의

- 시스템 입력 정보 기반 시도별 금연사업 현황 확인 및 예산배분, 금연 환경 조성 우수사례 선정 시 활용(정량지표 항목)됨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92p 참조)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다) 보고절차

단계	관련내용	비고
1. 시스템 로그인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보건소 [사업담당자 ID] 로그인
2. 실적 입력	• 금연클리닉 월별실적	※ 금연클리닉 월별실적 모니터링은 자동 입력됨 ※ 금연구역 지도점검 모니터링은 누계로 작성
	•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금연교육 실시현황	
	• 금연업무 인력현황	
	• 금연사업 예산현황	
3. 집계	• 입력된 실적을 [집계]	
4. 승인요청	• 시도에서 각 시군구별 실적 검토	• [승인요청] 이후 [회수]/[반려] 가능
5. 회수(필요시)	• [회수] : 시·도청에 승인요청 한 실적을 보건소에서 회수함	※ 시·도청의 [접수] 전에만 가능
6. 실적 수정 및 재보고(회수시)	• 회수 후 2번(실적 입력 작성)에서 4번 (승인요청) 반복	
7. 시·도청의접수/반려/승인	• 접수 : 보건소에서 승인요청 한 실적을 시·도청에서 접수	접수된 실적은 [회수] 불가
	• 반려 : 보건소에서 승인요청 한 실적을 시·도청에서 반려함	반려된 실적은 점검 후 재 승인요청 절차 ① 수정 : 2.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정 ② 집계 : '실적보고(반기)'에서 재 집계 ③ 승인요청 : '실적보고(반기)'에서 승인요청
	• 승인 : 시·도청에서 접수한 실적이 승인됨	
8. 보건복지부승인	• 보건복지부 검토 후 승인	
9. 최종확인	• 모든 실적보고가 완료(마감)된 후 조회가능	모든 실적보고가 완료(마감)된 후 조회 가능

2) 사업실적 지표

가) 금연클리닉 운영결과 실적지표 체계



나) 실적지표 세부 내용

● 보건소 금연클리닉 목표대비 등록률

- 금연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금연클리닉 등록률	$\frac{\text{금연클리닉 등록자 수}}{\text{목표인구수}} \times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 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지정자 포함)
- ※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 지역별성인흡연율 × 지역별 목표율(시도별 차등 적용)
- ※ 만19세 이상 인구수 : 전년도 12.31.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 ※ 지역별 성인흡연율 : 전전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표준화율)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결심률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중 금연결심일을 지정하고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금연클리닉 등록자금연결심률	$\frac{\text{금연시작일 결심자 수}}{\text{금연클리닉 등록자수}} \times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 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지정자 포함)
- ※ 금연시작일 결심자수 : 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금연결심일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 수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 금연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결심일을 지정하고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frac{\text{금연클리닉 금연결심자 수}}{\text{목표인구수}} \times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지역별성인흡연율×지역별 목표율(시도별 차등 적용)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결심자수 : 1.1.~12.31.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후 금연결심일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 4주 금연성공률

-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28일)간 금연에 성공한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금연클리닉 4주금연성공률	$\frac{\text{4주간 금연 성공자 수}}{\text{금연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자수}} \times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자 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날이 1.1.~12.31. 사이인 사람 수

※ 4주간 금연성공자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날이 1.1.~12.31. 사이인 사람 중 금연상담을 시작한 후 현재 까지(4주시점) 담배를 단 한 개비라도 피우지 않은 사람 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 6개월(24주) 금연성공률

-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168일)간 금연에 성공한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금연클리닉24주 (6개월)금연성공률	$\frac{\text{6개월(24주)간 금연 성공자수}}{\text{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경과자수}} \times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경과자 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24주가 경과한 날이 1.1.~12.31. 사이인 사람 수

※ 6개월(24주)간 금연성공자수 : 금연결심일로부터 24주가 경과한 날이 1.1.~12.31. 사이인 사람 중 금연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지(6개월 시점)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우지 않은 사람수

● 이용자 1인당 평균상담횟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결심일을 지정한 사람의 서비스 종결시점까지의 총 상담횟수의 평균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이용자 1인당 4주, 6주, 12주, 6개월 평균상담횟수	$\frac{\text{4주, 6주, 12주, 6개월(24주) 경과자 수 전체의 상담횟수 합계}}{\text{4주, 6주, 12주, 6개월(24주) 경과자 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총 상담 횟수: 서비스 종결 상태인 사람의 내소, 출장, 전화, 기타 등 모든 상담 횟수의 합산 값

● 보건소 금연클리닉 4주 측정성공율(금연성공자의 CO 또는 코티닌 측정 성공률)

- 4주(28일) 금연성공자의 CO 또는 코티닌 측정을 통한 성공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금연클리닉 4주 금연성공자의 CO 또는 코티닌 측정 성공률	$\frac{\text{CO 또는 코티닌 검증을 실시한 4주 금연자성공자 수}}{\text{4주 금연성공자 수(자가보고, CO 또는 코티닌 측정 성공자)}} \times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CO 또는 코티닌 측정: CO 측정 결과가 10ppm 이하인 사람 또는 코티닌 검사 결과 음성(negative)인 사람

● 보건소 금연클리닉 6개월 측정성공율(금연성공자의 CO 또는 코티닌 측정 성공률)

- 6개월(24주) 금연성공자의 CO 또는 코티닌 측정을 통한 성공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자의 CO 또는 코티닌 측정 성공률	$\frac{\text{CO 또는 코티닌 검증을 실시한 6개월 금연성공자 수}}{\text{6개월 금연성공자 수(자가보고, CO 또는 코티닌 측정 성공자)}} \times 100$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CO 또는 코티닌 측정: CO 측정 결과가 10ppm 이하인 사람 또는 코티닌 검사 결과 음성(negative)인 사람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3) 정부합동평가지표 안내

가) 정부합동평가 개요

- 목적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절차 : 평가지표 개발 및 검토(전년도) > 평가 실적 입력 (1월) > 실적확인 (2월) > 최종 검증 및 환류 (3월)

나)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지표(금연) 세부 내용

- 지표명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 지표 설명 :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지역사회 흡연자 관리수준 점검
- 산식

1. 지역사회 성인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률(40점)

$$= \frac{\text{'23년 지자체별 금연클리닉 등록인구 수}}{\text{'23년 지자체별 19세 이상 성인 흡연자 등록 목표인구 수}} \times 100 \times 0.4$$

2. 등록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5회 이상 제공률(60점)

$$= \frac{\text{'23년 지자체별 5회이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자 수}}{\text{'23년 지자체별 금연클리닉 등록인구 수}} \times 100 \times 0.6$$

3. 전년대비 실적 개선율(10점)

$$+ \frac{\text{전년 시도 실적 대비 개선율*}}{\text{}} \times 100 \times 0.1$$

● 산식 설명

1. 지역사회 성인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률(40점)

지표설명	측정도구
$\frac{\text{'23년 지자체별 금연클리닉 등록인구 수}}{\text{'23년 지자체별 19세 이상 성인 흡연자 등록 목표인구 수}} \times 100 \times 0.4$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만 19세 이상 성인인구 중 지역별 흡연인구 수 : 전년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22.12.31.) 중 전전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청 주관) 지역별 성인흡연을 반영

※ 등록 목표인원수 : 금연클리닉 등록목표율*(최근 3개년 전국 시도 평균값, 3.1%) 적용된 대상자

2. 등록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5회이상 제공률(60점)

지표설명	측정도구
$\frac{\text{'23년 지자체별 5회이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자 수}}{\text{'23년 지자체별 금연클리닉 등록인구 수}} \times 100 \times 0.6$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금연상담서비스 제공자 수 : 금연상담서비스 5회 이상(대면, 비대면 허용) 제공자 수

3. 전년대비 실적 개선율(10점)

※ 전년도 실적 대비 증가율 반영

● 목표치 : 60.1점 *최근 3개년 실적 평균값

● 평가기준일 : 2023.12.31.

IV

관련 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금연클리닉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건소에서는 귀하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자의 금연동기를 강화하고, 금연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서비스는 대상자의 흡연상태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금전적인 대가는 없으며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나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귀하의 건강 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국가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인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등)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관계:
☐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연클리닉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구분	항목	보유 기간
가. 본인여부 확인 나.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대상자관리, 금연상담, 니코틴 보조제 제공과 같은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다. 사업의 효과측정 및 평가, 통계분석, 만족도조사	필수	가. 인적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직장전화 중 최소 1개), 주소 나. 기타정보 : 과거 흡연력(처음흡연연령, 하루평균 흡연량, 총흡연기간), 사용중인 담배제품, 금연클리닉 등록경로, 금연지지자, 금연결심일, 금연시작일, 매 회 서비스 중 수집되는 흡연력 평가 및 금연상담 정보	서비스 종료 후 3년
	선택	가. 인적정보 : 이메일, 의료보장유형, 학력, 직업 나. 신체정보 : 신장, 체중, BMI, 복부둘레 다. 습관 및 취미정보 : 음주경험, 음주량, 음주횟수, 운동여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항목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구분	항목	보유 기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사업의 효과측정 및 평가, 통계분석	필수	<u>건강정보 : 니코틴패치금기증 여부, 혈압</u>	서비스 종료 후 3년
	선택	<u>건강정보 : 질병정보, 복용약물, 호기일산화탄소 농도</u>	

※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후 선택정보는 미제공하여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에 제한은 없음)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	----------------------------	------------------------------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연계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 서비스 연계	가. 인적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직장전화 중 최소 1개), 주소 나. 기타정보 : 과거 흡연력(처음흡연연령, 하루평균흡연량, 총흡연기간), 사용중인 담배제품, 금연클리닉 등록경로, 금연지지자, 금연결심일, 금연시작일, 매 회 서비스 중 수집되는 흡연력 평가 및 금연상담 정보 다. 민감정보(건강) : 니코틴패치금기증 여부, 혈압, 질병정보, 복용약물, 호기일산화탄소 농도	서비스 종료 후 3년
사업성과 연구 및 평가기관*	사업효과측정 및 평가 통계분석 연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정보	연구 및 평가 기간

* 발생 시 제공하는 건으로 관련 세부 사항은 제공 후 30일 이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개인정보 처리현황>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메뉴를 통해 공개합니다.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타기관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연클리닉 서비스는 지속 제공 가능)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선택)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 [과태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 하단 내용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감면 서비스 신청 확인

☞ 금연클리닉을 통한 과태료 감면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협조적 참여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시 등록 가능)

과태료 감면 서비스 신청 및 비협조적 참여 시 서비스 중단 및 과태료 감면 불가 확인	☐ 예	☐ 아니요
---	----------------------------	------------------------------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2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등록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등록번호	
성명		성별	☐ ① 남 ☐ ② 여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만 _____ 세)	전화 번호	집
주소			휴대폰
이메일			직장
금연클리닉 등록경로 (다중 선택 가능)	☐ ①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해 ☐ ② 플랜카드, 포스터, 홍보책자 등을 통해 ☐ ③ 인터넷을 통해 ☐ ④ 보건소 안내문을 통해 ☐ ⑤ 주변의 권유 ☐ ⑥ 금연상담전화를 통해 ☐ ⑦ 행사/이벤트를 통해 ☐ ⑧ 의료진의 권고 ☐ ⑨ 기타 : _____		
처음흡연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총 흡연 기간
만 _____ 세 (혹은 _____ 년도)		_____ 개비	_____ 년 _____ 개월
사용 중인 담배제품 (모두 선택)	☐ ① 쉼(일반담배) ☐ ②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 ☐ ③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미함유) ☐ ④ 쉼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릴, 글로 등) ☐ ⑤ CSV형 전자담배(쉼, 릴 베이퍼 등) ☐ ⑥ 머금은 담배(스누스) ☐ ⑦ 파이프 담배 ☐ ⑧ 엽쉼(시가) ☐ ⑨ 각련(말아 피우는 담배) ☐ ⑩ 물 담배 ☐ ⑪ 씹는 담배 ☐ ⑫ 냄새 맡는 담배 ☐ ⑬ 무응답		
금연지지도 (다중 선택 가능)	금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부모/조부모 ☐ ② 형제자매 ☐ ③ 배우자/애인 ☐ ④ 자녀 ☐ ⑤ 친구/선후배 ☐ ⑥ 직장동료 ☐ ⑦ 교사 ☐ ⑧ 의료인 ☐ ⑨ 기타 : _____ ☐ ⑩ 없음		
질병정보	☐ ① 구강인두암 ☐ ② 후두암 ☐ ③ 식도암 ☐ ④ 기관, 기관지 및 폐암 ☐ ⑤ 급성 골수성 백혈병 ☐ ⑥ 위암 ☐ ⑦ 간암 ☐ ⑧ 췌장암 ☐ ⑨ 신장암 ☐ ⑩ 요관암 ☐ ⑪ 자궁경부암 ☐ ⑫ 방광암 ☐ ⑬ 결직장암 ☐ ⑭ 뇌졸중 ☐ ⑮ 실명, 백내장, 노인성 황반변성증 ☐ ⑯ 모성흡연으로 인한 선천적 결함:구강안면 파열 ☐ ⑰ 치주염 ☐ ⑱ 청소년기 대동맥류, 조기 복대동맥죽상경화증 ☐ ⑲ 관상동맥심질환 ☐ ⑳ 폐렴 ☐ ㉑ 동맥경화성폐질환 말초혈관질환 ☐ ㉒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천식, 호흡기영향, 비염 ☐ ㉓ 당뇨 ☐ ㉔ 여성 생식기계영향(생식능력저하 포함) ☐ ㉕ 고관절 골절 ☐ ㉖ 자궁외임신 ☐ ㉗ 남성 성기능-발기부전 ☐ ㉘ 류마티스관절염 ☐ ㉙ 고혈압 ☐ ㉚ 고지혈증 ☐ ㉛ 기타 _____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복용이유	

니코틴패치 금기증 여부	☐ ① 최근 2주내 불안정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 ② 중증 부정맥 ☐ ③ 뇌졸중 ☐ ④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 ⑤ 피부 알레르기 ☐ ⑥ 임신 또는 수유 중 ☐ ⑦ 기타 : ☐ ⑧ 없음			
신장 (cm)		체중 (kg)		BMI
복부둘레 (inch)		혈압 (mmHg)	/	호기일산화탄소 농도 (ppm)
음주 경험	☐ ① 최근 1년 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음 ☐ ② 최근 1년 간 술을 마신 적이 있음			
	1회 음주량	_____ 잔 ※ 종류에 상관없이 술잔을 기준으로 음주량 확인. 단, 캔맥주 1개(355cc)=1.6잔		
	음주 횟수	일주일에 평균 _____ 회		
운동 여부	☐ ① 있음 ※ 주1회, 1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 여부 (평소보다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뛸 정도) ☐ ② 없음 - 일, 이동, 스포츠 여가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 - 예: 빠르게 걷기,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물건 나르기, 청소, 육아 등			
	운동 종류		운동 횟수	일주일에 평균 _____ 회
	운동량	한 번 운동할 때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다음의 3가지는 금연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평가 등 다양한 근거를 산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집하는 추가 문항입니다. 필요한 경우 응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미응답 시에도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종류	☐ ① 국민건강보험 ☐ ② 의료급여 ☐ ③ 모름 ☐ ④ 미가입 ☐ ⑤ 무응답/응답거부			
교육수준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③ 중학교 졸업 이하 ☐ ④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⑤ 전문대/대학교 졸업 이하 ☐ ⑥ 대학원 수료 이상 ☐ ⑦ 모름 ☐ ⑧ 무응답/응답거부			
직업 (보기 선택이 어려울 시 ⑭ 기타란에 가능한 자세히 기입)	☐ ① 관리자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 고위직, 임원 및 관리자 등)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건축가, 기술자, 의사, 교사, 종교인 등) ☐ ③ 사무 종사자 (사무원, 행정원, 비서, 상담원 등) ☐ ④ 서비스 종사자 (경찰, 소방관, 간병인, 승무원, 미용사, 조리사 등) ☐ ⑤ 판매 종사자 (각종 영업 및 판매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어업 재배, 사육, 감별, 가공 관련 종사자) ☐ ⑦ 기능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기공, 제조, 건축, 설비 등 관련 종사자) ☐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철강, 식품가공 등에 따른 기계 조작원)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 하역, 운송 등 단순 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⑪ 청소년(만 18세 이하) ☐ ⑫ 대학생 ☐ ⑬ 무직 ☐ ⑭ 기타: _____ ☐ ⑮ 모름 ☐ ⑯ 무응답/응답거부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제7차 개정)>			
금연결심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금연시작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흡연자 평가

1) 지난 1년 동안 금연 시도 여부?

☐① 예(가장오랫동안 금연시도 기간: _____개월 ____일) ☐② 아니오

2)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은? (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자기 의지 ☐② 보건소 금연클리닉
☐③ 지역금연지원센터(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④ 금연상담전화
☐⑤ 병의원 금연치료
☐⑥ 기타 서비스 또는 대체용품 사용 _____

3) 금연에 실패한 이유는?

☐①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② 금단증상 때문에
☐③ 스트레스가 쌓여서 ☐④ 주위의 유혹에 의해서
☐⑤ 금연 후 체중이 늘어서 ☐⑥ 기타 _____

4) 이번에 담배를 끊고 싶은 이유를 가장 큰 이유부터 3가지를 표시하십시오. 첫 번째 이유 (),
 두 번째 이유 (), 세 번째 이유 ()

① 가족 혹은 주변사람들의 권유
 ②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현재 질병악화 및 장래 질병발생예방)
 ③ 담뱃값 인상 등 경제적 이유
 ④ 금연구역 확대 등 환경적 이유
 ⑤ 깨끗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예: 입 냄새가 고약, 옷에 담배 냄새가 났음)
 ⑥ 나의 흡연으로 주위사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⑦ 금연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⑧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
 ⑨ 기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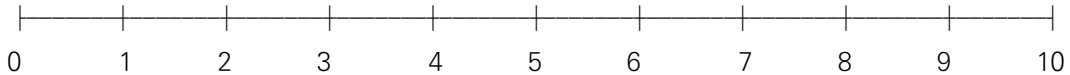
5) 평소에 하루 중 가장 흡연을 참기 힘든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② 잠들기 전 ☐③ 식사 후
☐④ 화장실에서/샤워 후 ☐⑤ 휴식시간
☐⑥ 습관적 상황에서(활력이 필요할 때/담배를 피우지 않음을 깨달을 때, 술/커피마실 때,
 혼자있거나 무언가 기다릴 때 등)
☐⑦ 긍정적 상황에서(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대화나 피로를 풀 때 등)
☐⑧ 부정적 상황에서(스트레스 받을 때, 일이 뜻대로 안될때, 화날 때 등)
☐⑨ 흡연자와 같이 있거나, TV의 배우 또는 주위 흡연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⑩ 기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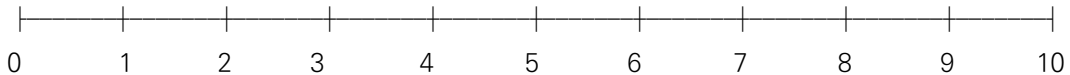
6) 금연동기, 금연자신감, 금연준비 정도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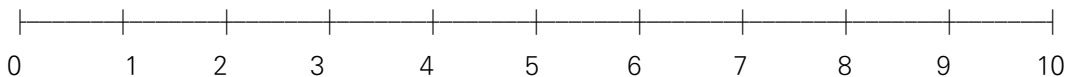
① 금연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② 당신은 금연에 성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③ 당신은 금연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출처: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니코틴의존도평가

(1)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 5분 이내(3) ☐ (2) 6분~30분 사이(2) ☐ 31분~60분 사이(1) ☐ 60분 이후(0)

(2) 금연구역(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에서 흡연을 참기가 어렵습니까?

☐ 예(1) ☐ 아니오(0)

(3)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 아침 첫 담배(1) ☐ 그 외의 담배(0)

(4)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 10개비 이하(0) ☐ 11~20개비(1) ☐ 21~30개비(2) ☐ 31개비 이상(3)

(5)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몇 시간동안 하루 중 다른 시간보다 더 자주 담배를 피우십니까?

☐ 예(1) ☐ 아니오(0)

(6)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예(1) ☐ 아니오(0)

니코틴의존도 판정 결과

_____ 점

상기 본인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3 금연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금연상담 기록지

금연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등록일	년	월	일	등록번호										
성명			연령	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주소							집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내용	방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금연실천 여부														
호기 일산화탄소(CO)														
코티닌 검사(소변)														
혈압														
체중(Kg)														
복부둘레(Inch)														
BMI														
음주 상태	평균 음주 량(잔)													
	횟수/주													
운동	횟수(회/주)													
	1회운동량(분/회)													
	운동종류													
니코틴 보조제 사용량 및 종류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경험 여부														
약물 사용량 및 종류														
약물 부작용 경험여부														
흡연욕구 여부 및 시기														
금연증상 여부 및 증상														
금연자신감 ※ 측정시 기입														
상담서비스 내용 ※ 측정시 기입														
금연유지여부	4주 금연여부				☐ ①예 ☐ ②아니오			6주 금연여부			☐ ①예 ☐ ②아니오			
	12주 금연여부				☐ ①예 ☐ ②아니오			6개월(24주)금연여부			☐ ①예 ☐ ②아니오			
	6개월 후 지속관리				☐ ①예 ☐ ②아니오			1년(365일)금연여부			☐ ①예 ☐ ②아니오			
총 결		☐ ①정상종결 ☐ ②중간종결			중간종결 사유			☐ ① 중간에 흡연(금연실패) ☐ ② 금연거부 ☐ ③ 연락두절 ☐ ④ 타 지역으로 이사 ☐ ⑤ 질병 및 사망 ☐ ⑥ 기타						

[illegible]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일일 금연상담 기록지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방법	☐ ① 대면/내소 ☐ ② 대면/방문 ☐ ③ 전화 또는 영상 ☐ ④ 기타 (※ SMS, SNS, 이메일 등 정보제공은 상담에서 제외)	
상담차수	차			
호기일산화탄소 (CO) ※ 대면상담 필수	ppm	코티닌 검사(소변)	☐ ① 미측정 ☐ ② 양성 ☐ ③ 음성	
혈압(mmHg)	/	체중	kg	
음주 여부	☐ ① 유 ☐ ② 무 ※ 최근1년간, 음주 유무	1회 음주량	소주	잔 / 맥주 잔
		음주횟수	회/ 주	
운동여부	☐ ① 유 ☐ ② 무 ※ 주 1회 10분 이상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 활동 운동(테니스,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운동종류		
		1회 운동량	분	
		운동횟수	회/ 주	
니코틴보조제제 공여부	☐ ① 니코틴패치 1단계 (종류: , 매) ☐ ② 니코틴패치 2단계 (종류: , 매) ☐ ③ 니코틴패치 3단계 (종류: , 매) ☐ ④ 니코틴껌 2mg(종류: , 정) ☐ ⑤ 니코틴껌 4mg(종류: , 정) ☐ ⑥ 니코틴사탕(종류: , 정)	약물처방 여부	☐ ① 있음 ☐ A 부프로피온(정) ☐ B 바레니클린(정) ☐ ② 없음	
		기타 행동치료제품 제공여부	☐ ① 제공함 ☐ ② 제공안함	
니코틴 보조제 부작용 경험 ☐ ① 패치 ☐ ② 껌 ☐ ③ 사탕	☐ ① 있음 (☐ A 피부증상 ☐ B 두통 ☐ C 어지럼증 ☐ D 메스꺼움, 구토 ☐ E 실신 ☐ F 입안 통증 ☐ G 딸꾹질 ☐ H 타액분비 과다 ☐ I 소화불량, 속쓰림 ☐ J 기타 () ☐ ② 없음			
약물 부작용 경험 ☐ ① 부프로피온 ☐ ② 바레니클린	☐ ① 있음 (☐ A 불면증 ☐ B 두통 ☐ C 신경과민 ☐ D 갈증 ☐ E 소화불량, 구토 ☐ F 변비 ☐ G 오심 ☐ H 우울, 불안 ☐ I 기타 () ☐ ② 없음			
흡연육구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가장 흡연을 참기 힘들습니까? ☐ 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 ② 잠들기 전 ☐ ③ 식사 후 ☐ ④ 화장실에서/사위 후 ☐ ⑤ 휴식시간 ☐ ⑥ 습관적 상황에서(활력이 필요할 때/담배를 피우지 않음을 깨달을 때, 술/커피마실 때, 혼자있거나 무언가 기다릴 때 등) ☐ ⑦ 긍정적 상황에서(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대화나 피로를 풀때 등) ☐ ⑧ 부정적 상황에서(스트레스 받을 때, 일이 뜻대로 안될때, 화날 때 등) ☐ ⑨ 흡연자와 같이 있거나, TV의 배우 또는 주위 흡연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 ⑩ 기타			
금단증상	☐ ① 있음 (☐ A 긴장 및 불안 ☐ B 우울 ☐ C 입맛의 변화 ☐ D 변비 ☐ E 불면증 ☐ F 집중력 저하 ☐ G 현기증 ☐ H 헛기침, 마른기침 ☐ I 가래 ☐ J 민감, 짜증, 공격성 ☐ K 기타 () ☐ ② 없음			
금연동기 및 자신감 ※ 금연성공 평가시 (4주, 6주, 12주, 24주) 측정 필수	① 금연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② 당신은 금연에 성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입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출처: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상담서비스 내용 ※ 해당사항시 기입	① 금연계획도입기 ☐ A 금연서약서 작성/(재)확인 ☐ B 외부에 자신의 금연알리기 격려 ☐ C 금연의 방해요인 예상 ☐ D 금연의 방해요인 제거			
	② 문제해결 및 대처방법 개발 ☐ A 긍정적 감정지지 ☐ B 흡연의 경제적 손실계산 ☐ C 스트레스 관리·대처 ☐ D 심호흡 등 인지행동 전략 ☐ E 담배거절하기 훈련 ☐ F 새로운 생활습관 만들기 ☐ G 금연의 양가감정표현(이득/손실) ☐ H 금연과정에 대해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			
	③ 금연지식 제공 ☐ A 흡연의 영향/흡연과 질병 ☐ B 간접흡연 ☐ C 금연의 장점과 이득 ☐ D 금연의 오해 ☐ E 신종담배(전자담배, 씹는담배 등) ☐ F 기타(_____)			
	④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 A 고혈압(혈압) ☐ B 당뇨(혈당) ☐ C 심뇌혈관질환 ☐ D 폐질환 ☐ E 암 ☐ F 기타(_____)			
	⑤ 건강행위 연계 상담 ☐ A 음주관리 ☐ B 식이관리 ☐ C 운동관리 ☐ D 구강관리 ☐ E 체중관리 ☐ F 기타(_____)			
	⑥ 재흡연 예방 ☐ A 금연축하 및 보상(금연수료증, 금연기념품 등) ☐ B 재흡연 방지전략 마련 ☐ C 내부의 적 극복하기 ☐ D 기타(_____)			
	⑦ 금연 후 변화인지 ☐ A 신체변화 인지 ☐ B 심리변화 인지 ☐ C 환경변화 인지(타인의 반응 등) ☐ D 기타(_____)			
	⑧ 외부자원 연계 ☐ A 금연상담전화(1544-9030) ☐ B 초중고등학교 ☐ C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 ☐ D 건강길라잡이(www.hp.go.kr) ☐ E 기타(_____)			
기타 상담내용				
금연유지여부	4주 금연여부	☐ ①실패 ☐ ②성공	6주 금연여부	☐ ①실패 ☐ ②성공
	4주금연확인방법	☐ ①자가 ☐ ②CO측정 ☐ ③코티닌측정	6주금연확인방법	☐ ①자가 ☐ ②CO측정 ☐ ③코티닌측정
	※ 금연유지 확인메시지<4주/6주> 금연상담 시작 후 현재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 ☐ 금연실패(중간종결) ☐ ②아니오 ☐ 금연성공			
	12주 금연여부	☐ ①실패 ☐ ②성공	6개월(24주) 금연여부	☐ ①실패 ☐ ②성공
	12주 금연확인방법	☐ ①자가 ☐ ②CO측정 ☐ ③코티닌측정	6개월 금연확인방법	☐ ①자가 ☐ ②CO측정 ☐ ③코티닌측정
	6개월 후 지속관리	☐ ①예 ☐ ②아니오	1년(48주) 금연여부	☐ ①예 ☐ ②아니오
	※ 금연유지 확인메시지<12주 이후> 1) 금연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2개비 초과) ☐ 금연실패(중간종결) ☐ ②아니오(2개비 이하) ☐ 금연성공 2) (1번문항 '예'일 경우) 그렇다면 최근 1주일 내 담배를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예 ☐ ②아니오			
	중 결	☐ ①정상종결 ☐ ②중간종결 ☐	중간종결 사유	☐ ①중간에 흡연(금연실패) ☐ ②금연거부 ☐ ③연락두절 ☐ ④타 지역으로 이사 ☐ ⑤질병 및 사망 ☐ ⑥기타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4 시·도별 금연사업 실적보고 서식

1) 금연클리닉 운영실적(000보건소)

성인(만19세 이상) 흡연인구 추계			금연클리닉 등록인구 추계	
성인 인구수	성인 흡연율	성인 흡연인구 수	등록 목표율	등록 목표인구 수

등록자수	흡연인구 대비 등록률	목표인구 대비 등록률	금연 결심자수	금연 결심률	서비스 제공률

4주·6주·12주·6개월 금연유지평가				
경과자	성공자	성공률	측정성공자수	측정성공률

4주·6주·12주·6개월 평균상담횟수			
내소	출장	전화	기타

시·도 정부합동평가지표(평가대상)				
등록 목표율	등록 목표인구수	금연클리닉 등록률	5회상담이수자 수	5회 이상 제공률

시·군·구 정부합동평가지표(평가대상 제외, 참고자료)				
등록목표율	등록목표인구수	금연클리닉 등록률	5회상담이수자 수	5회 이상 제공률

2) 금연구역 지정 관리 이행실태 모니터링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 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칭	구분	과태료	제정일자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		20 . .	20 . .	20 . .

● 금연지도원 관련 조례현황

조례명칭	구분	제정일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	20 . .	20 . .	20 . .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나) 금연시설

● 공중이용시설 현황²¹⁾

(단위 : 개소)

구분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총계			
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공연장			
대규모 점포,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만화대여업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공동주택			
유치원 · 어린이집 10m 이내			

21) 지정현황, 시설현황 :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 등 현황점검개소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시설 등 개소수(한개 시설을 2회 이상 중복 점검한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점검건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누적 건수

●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해당 시도 및 보건소만 작성)²²⁾

(단위 : 개소)

구분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총계			
(예시) 공원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00거리			
00광장 등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현황

공동 주택명	총세대 수	지정(해제)범위								최초 지정 (해제)일	지정 변경 일	주소 (상세 주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찬성 세대수	지정 여부	찬성세 대수	지정 여부	찬성세 대수	지정 여부	찬성세 대수	지정 여부			

● 위반사항 조치

- 금연시설 지정 및 흡연실 시설기준 위반(제9조제4항 및 제5항)

구분	금연시설 지정위반				흡연실 시설기준위반			
	주의· 경고	과태료		고발	주의· 경고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금연시설 흡연 금지 위반(제9조제6항)

구분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주의·지도	과태료		주의·지도	과태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현황지정현황: 조례로 지정한 시설의 개소수(예: 조례지정 공원, 놀이터, 거리 개소수), 점검개소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시설 등 개소수(한개 시설을 2회이상 중복 점검한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 점검건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누적 건수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다) 흡연구역

●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금연시설 지정위반				흡연실					흡연실 시설기준위반			
		주의 · 경고	과태료		고발	설치현황		실외 흡연구역 개소수	흡연부스 개소수		주의 · 경고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설치	미 설치		실내	실외		건수	금액	
공중 이용 시설														
조례 지정 시설														
공동주택														

* (실외흡연구역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실외흡연구역

** (흡연부스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흡연실

※ 시설 현황 양식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조례시설 시설종류별로 작성

● 금연구역 외 흡연구역 현황

구분	흡연실				
	설치현황		실외 흡연구역 개소수	흡연부스 개소수	
	설치	미설치		실내	실외

* (실외흡연구역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실외흡연구역

** (흡연부스 기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흡연실

라) 담배자동판매기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설치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단위 : 대)

구 분	시설현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성인인증장치 부착위반				
	시설 현황	점검 개소 수	점검 건수	위반 개소 수	주의 경고	과태료		고발	위반 개소 수	주의 경고	과태료		고발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미성년자 출입금지지역													
지정소매인점포 및 영업장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실													

마)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 업소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

구분	시설현황			위반사항 조치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주의, 경고	고발
담배 소매인업소					

3) 교육시설 현황

구분	교육대상									교육장소		첨부파일 (필요시)
	계	미취 학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노인	임산 부	기타	구분	장소명	
횟수												
인원												

※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가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을 기록함

2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4) 사업운영현황

가) 예산

※ 국비 기준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구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예산	집행	집행잔액 (예산-집행액)
(필수)	금연클리닉	인건비			
		재료비(니코틴보조제)			
		재료비(기타)			
		운영비			
	금연구역관리	인건비			
		운영비			
(선택)	단체교육	재료비			
		운영비			
	캠페인 및 홍보	재료비			
		운영비			
	타기관 연계	재료비			
		운영비			
	기타	재료비			
		운영비			

① 금연클리닉

- 인건비 : 금연상담인력 인건비(단가×인원수×개월)
- 재료비
 - 니코틴 보조제
 - 기타 : 금연성공 기념품, 금연홍보물품, CO 및 니코틴 측정기 구입비, 그 밖의 소모품, 인쇄비 등
- 운영비 : 교육비, 여비 등

② 금연구역관리

- 인건비 :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단가×인원수×개월) 등
- 운영비 : 상해 보험 가입, 여비, 교육비, 자원봉사 활동비 등

③ 세부사업명

- 재료비
- 운영비

나) 인력

구분	이름	성별	생년 월일	고용 형태*	경력 기간 (개월)*	학력*	전공* (최종 학위)	직무 교육 이수 여부*	교육명 (시행 기관)
금연클리닉									
금연단속									

- 고용형태 :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위촉직, 공중보건의사, 업무대행, 민간위탁인력 등
- 경력기간 : 관련업무로 근무한 총 개월 수를 입력
- 학력 : 최종 취득한 학위의 학력(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등)
- 전공 : 해당분야로 채용된 인력의 전공분야(간호, 보건, 심리, 행정 등)
- 직무교육이수여부 : 해당업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이수/미이수/해당없음)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

3부 참고자료



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소개**1) 수립배경**

-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따라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 '20년 제4차 종합계획이 완료되어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을 제시할 제5차 종합계획(HP2030, '21~'30) 마련 필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정책의 총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계획
 -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미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전략 제시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과제별 종합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기 위한 지침

2)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

- (흡연) 지속적인 담배규제정책이 남성 흡연율의 감소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며,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는 경향
 - 껴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제품의 출현은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새로운 건강문제로 대두

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3) 주요 과제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기본 원칙

- 1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2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 3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 4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 5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6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중점과제별 성과지표(금연)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

연번	과제	번호	성과 지표	기준치 (‘18)	목표치 (‘30)
1	금연	1	성인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29.0%
2		2	성인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6.0%
3		3	소득 1분위 성인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34.5%
4		4	소득 5분위 성인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25.5%
5		5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	9.0%p
6		6	소득 1분위 성인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5.5%
7		7	소득 5분위 성인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2.0%
8		8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	3.5%p
9		9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연령표준화)	36.7%	25.0%
10		10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연령표준화)	7.5%	4.0%
11		11	소득 1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연령표준화)	40.1%	28.0%
12		12	소득 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연령표준화)	31.0%	20.0%
13		13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 (연령표준화)	9.1%p	8.0%p
14		14	소득 1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연령표준화)	10.7%	6.7%
15		15	소득 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연령표준화)	3.2%	1.7%
16		16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표준화)	7.5%p	5.0%p
17		17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7.0%
18		18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3.0%
19 (아동· 청소년)		19	중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	3.9%	3.0%
20 (아동· 청소년)		20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	14.1%	13.2%
21 (아동· 청소년)		21	중학교 여학생 현재 흡연율	2.1%	1.2%

3부 참고자료

연번	과제	번호	성과 지표	기준치 ('18)	목표치 ('30)
22 (아동·청소년)		22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 흡연율	5.1%	4.2%
23		23	현재비흡연자의 성인남성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14.4%	10.0%
24		24	현재비흡연자의 성인여성 직장실내 간접흡연노출률	8.7%	5.5%
25		25	현재비흡연자의 성인남성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1.0%	0.5%
26		26	현재비흡연자의 성인여성 가정실내 간접흡연노출률	6.1%	3.0%
27		27	주 1일이상 중고등학생의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	10.0%
28		28	실내전면 담배제품 사용금지 법안도입	-	도입
29		29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52.7%	70.0%
30		30	성인 현재흡연자의 1개월내 금연계획률	16.5%	25.0%
31		31	남학생 처음 담배제품 사용경험 연령	12.8세	14.5세
32		32	여학생 처음 담배제품 사용경험 연령	13.5세	15.0세
33		33	FCTC 이행보고서의 제 13조 이행률	0.0%	100.0%
34		34	건강경고 크기의 확대	30.0%	100.0%
35		35	담배제품의 성분 공개 법안 도입	-	도입
36		36	담배제품 성분 공개 대상 확대	-	공개
359	근로	5	남성 근로자 흡연율	39.0%	30.0%
360	자	6	여성 근로자 현재흡연율	7.3%	5.0%

● 개인의 금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별 추진 예정

● 담배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1)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 신종담배의 시장진입 차단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담배의 정의 확대*, 건강증진부담금 등 개편 추진

* (현행) 담배(연초의 잎으로 제조) → (확대) 연초 및 합성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

2)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 (담배 가격)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
- (제조·유통)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로 관리,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
- (판매)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금지 등
 - * 경고그림·문구 면적 : (현행) 50% (경고그림 30%) → (개정) 75% (경고그림 55%)
- (성분 공개)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공개 의무화
- (금연 구역)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3)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 담배 유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참여형·체험형으로 교육하여 신규 흡연자 발생 감소 및 흡연 시작 연령 지연
- 금연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사업 고도화 및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 * (예시) 금연상담전화 → 니코틴 중독·금연 의지 등을 고려한 보건소, 병·의원, 금연 캠프, 전화상담 등 연계

II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

※ 매뉴얼 다운로드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네트워크-업무매뉴얼

1) 시스템 개요

● 시스템 명칭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 시스템 운영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용 목적

- ①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저장·관리함
- ②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소 금연사업의 정보를 유통함
- ③ 금연정책 수립 기반을 위해 금연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분석함

● 대상업무

- ① 보건소 금연사업 운영 및 관리(금연구역 관리, 조례, 인력, 예산 등)
- ②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 시스템 사용자

No	사용기관	사용자	사용자 정의
1	시·군·구 (보건소)	금연 상담사	보건소에 소속되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금연사업 담당공무원	보건소에 소속되어 보건소 금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시·도청	금연사업 담당공무원	시·도청에 소속되어 시·도청 금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담당공무원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금연정책 및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운영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사업 담당자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금연정책 및 사업업무를 담당하는 자
		시스템 관리자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보건소 금연사업 정보 시스템의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자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 금연사업 정보시스템(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함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조치함
 - ① 금연상담 서비스 등록 및 제공, 금연상담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음
 - ②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1인을 본 시스템의 기관 관리자로 지정하며, 기관 관리자는 사용자 ID 및 조직정보를 관리·감독하며, 사용자 정보를 매월 7일 갱신함
 -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1인 1 ID를 기본으로 함
 - 본 시스템의 로그인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함
 - 퇴사·이동 등 사용자의 인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ID 정보를 변경함 (사용여부 ‘아니오’ 수정 및 사용종료일 설정)
 - ③ 본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금함
 - ④ 금연클리닉 업무 관련자 및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보안서약서 작성 및 보관 : 신규 아이디 생성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종료일 이후 3년까지 보관
-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은 금연클리닉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함
 - ① 수집항목 : 사용자 ID, 이름, 성별, 소속 조직명, 직장전화번호, 직군, I-PIN ID (이상 필수정보), (이하 선택정보) 휴대전화번호, 전공
 - ② 수집방법 :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관리」
 - ③ 보유기간 : 회원 탈퇴(퇴직, 이동 등)시 즉시 파기
 - ※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 ※ 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연사업 정보시스템 매뉴얼 및 사용자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 아이디 부적절 관리 사례(감사원 감사 결과, 2020.06.1.)

-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점검 결과
 - 전보 또는 퇴직 등으로 금연시스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된 236명중, 31일이상 접근권한 종료처리가 지연된 자가 108명이었으며, 그 중 인사이동일 31일 이후 시스템 접속자는 42명인 것으로 나타남
- * 감사원감사 조치결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부적정에 대한 통보·권고 조치(2020.11.20.)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보안 서약서(직원용)

1. 본인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이나 퇴사 후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정보를 내·외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여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수행기관명]의 관련규칙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직위) :
(기관관리자)	성명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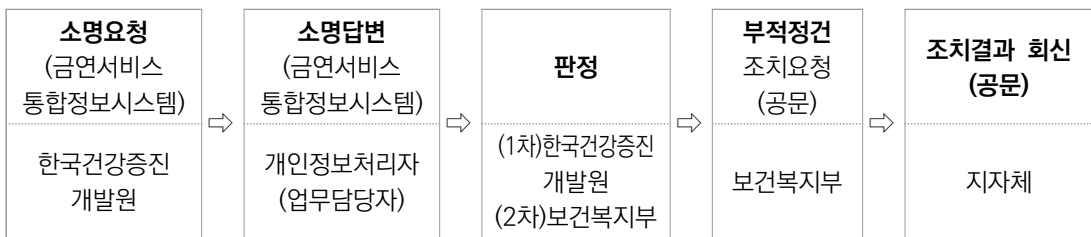
3)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개요

- 금연지원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업무처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업무처리 절차

- ①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 발생 시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 요청 받은 자는 10일 이내 사실에 입각하여 소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② 1차 판정 결과 부적정인 경우 지자체에서는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적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공문 회신



● 유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징계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업무 목적으로만 개인정보 처리 수행

4) 종결 정보 수정 안내

● 수정요청 방법 : Q&A게시판에 수정 서식 작성(10건 이상시 공문 송부)

- ① 정상 종결을 금연유지로 수정(전년도 대상자인 경우에만 수정)

* 6개월 기념품 등 물품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 ② 중간 종결을 금연유지로 수정(이전 달 종결자만 수정)

* 연락두절 대상자가 재방문 하는 경우에 한함

3부 참고자료

5) 시스템 사용 관련 Q&A

[자주하는 실수]

●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 누계입력

-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시설의 경우 매월 누계*로 입력해야 하나, 당월 실적만 입력하는 경우

* 예) 2020년 12월 실적의 경우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실적을 입력해야 함

보고구분 **월보고** | 보고년월 **2019-06** | 집계구분 ☐ 지도점검(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 ☐ 공동주택 ☐ 교육 ☐ 인력 ☐ 예산 **실적제출**

- 실적은 누계로 작성합니다.(신규실적 작성 시 '전월' 자료를 불러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 제6항
 - 정산이 완료된 실적은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 합니다.
 * 정산이 완료된 후 수정된 실적은 이월되어 누계 정산됩니다.

누계입력

금연클리닉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흡연실 현황/담배판매	공동주택	금연교육실시현황	금연업무인력현황	예산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											
구분	현황	시설현황		주의, 경고	금연시설 지정위반		실외흡연구역 지정현황	흡연부스 설치현황		미설치	주의, 경고
		점검 개소수	점검 건수		과태료 건수	금액		실내	실외		
청사	93	10	10					5	1	4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0	26	26					0	0	60	
대학교	9	2	2					0	1	5	
의료기관, 보건소 등	498	39	39					1	1	142	
어린이집	78	78	84					0		78	
청소년활동시설	3	3	3					1	1	1	
도서관	36	6	6					0	1	30	
어린이놀이시설	5										
학원	113										
교통관련시설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22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211	211	212					13		198	
공연장	25	10	10					0		25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17	17	55					0		17	
관광숙박업소	41							0		1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128							0		1	
목욕장	32							0		1	
게임제공업소	91	17	17					4		81	
만화대여업소	4	4	12					1		3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공동주택	3										
실내체육시설	210	10	10					89		121	

● 금연시설지정위반

- 금연시설지정위반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입력해야 하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입력한 경우

* 금연시설지정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1회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금연구역 흡연행위 위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

보고구분

월보고

 보고년월
 2019-06

집계구분

☐ 지도점검(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
 ☐ 공동주택
 ☐ 교육
 ☐ 인력
 ☐ 예산

 실적제출

- 실적은 누계로 작성합니다.(신규실적 작성 시 '전월' 자료를 불러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 제6항
 - 정산이 완료된 실적은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 합니다.
 * 정산이 완료된 후 수정된 실적은 이월되어 누계 정산됩니다.

금연클리닉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흡연실 현황/담배판매	공동주택	금연교육실시현황	금연업무인력현황	예산	
■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	구분	시설현황	주의, 경고	금연시설 지정위반	실외흡연구역 지정현황	흡연부스 설치현황	주의, 경고	
현황	점검 개소수	점검 건수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	고발	실내	실외	미설치
청사	93	10	10			5	1	4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0	26	26			0	0	60
대학교	9	2	2			0	1	5
의료기관, 보건소 등	498	39	39			1	1	142
어린이집	78	78	84			0		78
청소년활동시설	3	3	3			1	1	1
도서관	36	6	6			0	1	30
어린이놀이시설	5							
학원	113							
교통관련시설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22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211	211	212			13		198
공연장	25	10	10			0		25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17	17	55			0		17
관광숙박업소	41					0		1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128					0		1
목욕장	32					0		1
게임제공업소	91	17	17			4		81
만화대여업소	4	4	12			1		3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공동주택	3							
실내체육시설	210	10	10			89		121
합계	1,093	1,093	1,093	0	0	186	5	6,229
[2019년 06월 소계]								

3부 참고자료

● 담배자동판매기 현황과 담배판매지정소매인 현황

- (오류유형1) 담배자동판매기 현황과 담배판매지정소매인 현황을 반대로 입력한 경우
- (오류유형2) 담배자동판매기 현황과 담배판매지정소매인 현황에 모두 담배판매지정소매인현황을 입력한 경우
- (오류유형3) 담배판매지정소매인 현황을 누락한 경우

금연클리닉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흡연실 현황/담배판매	공동주택	금연교육실시현황	금연업무인력현황	예산				
금연구역 외 흡연실 현황											
구분	실외흡연구역 지정 현황			실외흡연부스 설치현황							
[2019년 10월 소계]	0			0							
담배판매업소(자동판매기 및 지정소매인) 현황 및 위반조치											
1. 담배자동판매기 현황 및 위반조치											
구분	시설현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				성인인증장치 부착위반				
	현황	점검 개소수	점검 건수	위반 개소수	주의, 경고	과태료 건수 금액	고발	위반 개소수	주의, 경고	과태료 건수 금액	고발
담배자동판매기 현황 및 위반조치 입력											
[2019년 10월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2.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현황 및 위반조치											
구분	시설현황		위반사항 조치								
	현황	점검 개소수	점검 건수	주의, 경고	고발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현황 및 위반조치 입력											
[2019년 10월 소계]	0	0	0	0	0						

- 예산입력단위는 ‘천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나, ‘원’단위로 입력한 경우

「금융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안내

3부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 금연구역지도점검

Q. 점검개소수와 점검건수의 차이

- A. 동일한 금연구역을 여러번 방문하여 점검한 경우, 점검개소수는 1개소이나, 점검건수는 방문하여 점검한 건수 모두 입력
예를 들어 3개의 청사를 각각 2번씩 총 6번 지도점검을 한 경우, 점검개소수는 3개소, 점검건수는 6건으로 입력

보고구분: 보고년월: 집계구분: ☐ 지도점검(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 ☐ 공동주택 ☐ 교육 ☐ 인력 ☐ 예산

- 실적은 누계로 작성합니다.(신규실적 작성 시 '전월' 자료를 불러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 제6항
- 정산이 완료된 실적은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 합니다.
* 정산이 완료된 후 수정된 실적은 이월되어 누계 정산됩니다.

금연클러닉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흡연실 현황/담배판매	공동주택	금연교육실시현황	금연업무인력현황	예산				
■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											
구분	현황	시설현황		주의, 경고	금연시설 지정위반		실외흡연구역 지정현황	흡연부스 설치현황		미설치	주의, 경고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과태료 건수	금액		실내	실외		
청사	93	10	10					5	1	4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0	26	26					0	0	60	
대학교	9	2	2					0	1	5	
의료기관, 보건소 등	498	39	39					1	1	142	
어린이집	78	78	84					0		78	
청소년활동시설	3	3	3					1	1	1	
도서관	36	6	6					0	1	30	
어린이놀이시설	5										
학원	113										
교통관련시설	15										
어린이운동장 등	22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211	211	212					13		198	
공연장	25	10	10					0		25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17	17	55					0		17	
관광숙박업소	41							0		1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128							0		1	
목욕장	32							0		1	
게임제공업소	91	17	17					4		81	
만화대여업소	4	4	12					1		3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공동주택	3										
실내체육시설	210	10	10					89		121	
합계	1,000	1,000	1,000					100		1,000	

● **인력현황보고(금연업무인력현황)**

Q. '자료생성'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금연상담사나 금연지도원이 누락되는 경우

- A. 금연정보시스템의 아이디를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금연상담사나 금연지도원은 반드시 1인 1아이디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함
아이디 생성은 [사업관리] >> [사용자 등록/관리] >> '신규'에서 가능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window with the title '보건소 실적보고 (월,...)' and '사용자 등록/관리'. The breadcrumb navigation is '사업관리 > 사용자 등록/관리'. The '신규' (New)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navigation, there are filters for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지역', '전체', '기관', '전체', '사용자명', '사용자그룹', and '사용유무'.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사용자리스트' (User List) on the left and '사용자 상세정보' (Use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right. The '사용자리스트' section has a table with columns: 사용자ID, 이름, 조직명, 사용자그룹, LOGIN 시간, and 직군1. The '사용자 상세정보' section contains various input fields for user details, including 계정유형, 업무구분, 사용자ID, 이름, I-PIN ID, 비밀번호, 조직명, 직군1, 직군2, 사용자그룹, 성별, 신규/경력, 경력 (개월), 지속고용, 약관동의, 사용유무, 사유, 사용시작일, and 사용종료일. A red warning message states '※ 비밀번호 - 기본값 및 초기화 0'. At the bottom, there is a '관리 대상자' (Management Target) section with a table for '등록번호', '이름', and '생년월일'. A '상담사 변경' (Counselor Change) button is also present.

3부 참고자료

Q. '자료생성' 시, 이미 채용이 종료되어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은 금연상담사나 금연 지도원이 리스트업 되는 경우

A. 금연정보시스템의 아이디를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로, 고용이 종료된 금연상담사나 금연 지도원의 아이디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아이디의 사용을 정지해야 함

금연정보시스템 아이디 사용 정지 절차

- ① [사업관리] >> [사용자 등록/관리] 접속
- ② 채용이 종료된 사용자 선택
- ③ 우측의 사용유무를 '아니오'로 변경하고, 채용시작일, 채용종료일,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을 모두 입력
※ 채용시작일과 사용시작일, 채용종료일과 사용종료일은 동일
- ④ '저장'

사업관리 > 사용자 등록/관리

기관유형: 보건소 | 지역: | 기관: | 사용자명: | 사용자그룹: 전체 | 사용유무: 전체

사용자리스트 ☐ 관리대상수

사용자ID	이름	조직명	사용자그룹	LOGIN 시간	직군
고		보건소	업무담당자	2019-07-12 15:20:2	공무
고		보건소	금연지도원		공무
구		보건소	금연지도원		공무
권		보건소	업무담당자		공무
권		보건소	금연지도원		전문인
권		보건소	업무담당자	2019-07-16 07:53:2	공무
김		보건소	금연상담사	2019-07-19 07:42:5	공무
김		보건소	금연지도원		전문인
김		보건소	업무담당자	2019-03-08 16:51:0	공무
김		보건소	금연지도원		공무
김		보건소	금연상담사	2017-06-09 16:50:1	전문인
김		보건소	금연지도원		전문인
김		보건소	금연상담사	2016-06-27 09:01:1	전문인
박		보건소	업무담당자	2014-02-24 11:08:5	공무
박		보건소	금연상담사	2019-07-19 11:51:4	공무
배		보건소	금연상담사	2019-07-19 07:31:1	전문인
양		보건소	업무담당자	2016-08-04 10:30:2	공무
양		보건소	금연상담사	2013-02-21 15:52:4	전문인
오		보건소	업무담당자	2017-10-10 17:04:2	공무
오		보건소	업무담당자	2016-08-03 17:37:2	공무
이		보건소	금연지도원		전문인
이		보건소	금연지도원		공무
이		보건소	금연지도원		전문인
이		보건소	금연지도원		공무

사용자 상세정보 ※ 비밀번호 - 기문값 및 초기화 0

계정유형: 개인 | 업무구분: 보건소 금연클리닉 | 사용자ID: | 이름: 고은애 | I-PIN ID: | 비밀번호: | 초기화: | 조직명: | 직군1: 공무원 | 직군2: 일반공무원 | 직급: | 사용자그룹: 업무담당자 | 성별: 여 | 경력: | 개월: | 신규/경력: | 지속고용: | 약관동의: 동의 | **사용유무: 예** | 사유: | **사용시작일: 2018-09-17** | **사용종료일: 9999-12-31** | 는 전문인력 필수값입니다

관리 대상자

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	----	------

Q. 직무교육 이수여부에서 직무교육의 범위

A. 교육의 종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

※ 교육받은 기간은 해당월에 받은 교육만 입력(지난달, 또는 작년에 교육을 받은 경우는 '미이수'로 입력)

실적보고 (월, 반기)...

사업보고 > 실적보고 (월, 반기)

조회 저장 취소 엑셀 달기

보고구분 월보고 |> 보고년월 2019-06 집계구분 ☐ 지도점검(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 ☐ 공동주택 ☐ 교육 ☐ 인력 ☐ 예산 실적제출

- 매월 최신의 인력현황(상당사, 금연지도단속요원 등 전문인력)을 생성합니다. - 정산이 완료된 실적은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합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공무원 제외
- 자료 생성은 [사업관리 > 사용자등록관리] 정보를 조회합니다.

금연클리닉 공중이용시설 조례시설 담배판매 공동주택 금연교육실시현황 **금연업무인력현황** 예산

금년 계획된 채용인력 수
금연클리닉 3명 금연지도단속 0명

자료생성년월 2019-06 신규
※ 새로운 인력현황을 작성할 경우 [신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시에는 사용자 등록/관리의 정보에서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월별 인력현황

No	구분	이름	성별	생년월일	고용형태	경력기간 (개월)	학력	전공 (회종학위)	직무교육 이수여부	교육명 (시행기관)
1	금연클리닉	이	여	19	무기계약근로자	49	대졸		해당없음	
2	금연클리닉	정	여	19	기간제근로자		대졸	심리학	해당없음	
3	금연클리닉	최	여	19	기간제근로자	33	대졸	기타	해당없음	

해당월 교육수료자만 이수처리

3부 참고자료

Q. (금연클리닉) 대상자 이·수관 시 등록 절차

A1 (이관 시) [대상자리스트] >> 이관 대상자 클릭 >> [등록카드] >> [대상자이관] >> 이관 기관 검색(보건소, 금연지원센터) 및 조회하여 이관대상 기관 클릭하여 선택함

A2 (수관 시) [대상자 리스트] >> [타기관연계] >> [조회] 클릭 >> 대상자 일치 여부 확인 후 더블 클릭하여 대상자 등록함

6) 주요 개편사항

- ① 국가건강검진결과 연계자료 조회 및 활용 : 대상자리스트에서 건강검진연계 자료 조회를 통해 금연필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요 건강정보 확인을 통해 금연상담 가능

- 대상자 정보 조회 : 대상자관리>대상자리스트>건강검진 연계>조회 클릭으로 정보 조회 가능

대상자 관리

대상자 관리 > 대상자 리스트

조회일자: 2021-06-22 ~ 2021-12-22 관리상태: 금연유지 소속명: 기관: 전체

관리 대상자 리스트

TODAY	예약자	등록자	4주대상	6주대상	12주대상	6개월대상	이상당자	타기관연계	건강검진연계	
No	연계상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검진일	판정일
1	미관심	성	남	1988-04-30	02-1111-2222	010-3				
2	미관심	준	남	1946-11-26	02-1111-2222	010-3				
3	등록희망	이	남	1980-11-26	02-1111-2222	010-3				
4	미관심	홍	남	1981-01-30	02-1111-2222	010-3				
5	미관심	석	남	1971-05-20	02-1111-2222	010-3				
6	미관심	일	남	1965-08-05	02-1111-2222	010-3				
7	미관심	관	남	1969-02-25	02-1111-2222	010-3				
8	미관심	록	남	1965-01-16	02-1111-2222	010-3				
9	등록희망	수	남	1985-01-23	02-1111-2222	010-3				
10	미관심	민	남	1969-07-11	02-1111-2222	010-3				
11	미관심	만	남	1961-12-11	02-1111-2222	010-3				
12	등록희망	제	남	1965-02-05	02-1111-2222	010-3				
13	미관심	홍	남	1957-07-25	02-1111-2222	010-3				
14	등록희망	홍	남	1949-10-25	02-1111-2222	010-3				
15	등록희망	걸	남	1968-09-10	02-1111-2222	010-3				
16		경	여	1965-02-03	02-1111-2222	010-3				
17		일	남	1970-04-25	02-1111-2222	010-3				

건강검진결과: 생활습관변화(금연필요)

대상자명: 김민석 생년월일: 1980-11-26 성별: 남
전화번호: 02-1111-2222 휴대전화: 010-3333-4444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로14길 25 123

검진일자: 2021-10-15 판정일자: 2021-10-20

신체계측정보

신장: 163.5 체중: 77.3 허리둘레: 91
BMI: 28.9 혈압: 110 / 62

건강검진 문진표

1.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 치료 중이십니까?

질병	진단	약물치료
뇌졸중(중풍)	☐	☐
심근경색/협심증	☐	☐
고혈압	☐	☐
당뇨병	☒	☐
이상지질혈증	☒	☐
폐결핵	☐	☐
기타(알코올)	☐	☐

4. 지금까지 평생 총 52(100개비) 이상의 일반담배(굴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3부 참고자료

- 대상자 정보 활용 : 대상자 명단 더블클릭> 상세정보 확인> 전화 상담을 통해 금연클리닉 등록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희망 시 '등록희망' 버튼 클릭, 연계 상태 명 변경 확인

No	연계상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검진일	판정일
1	등록희망	김영희	남	1980-12-15	02-1111-1234	010-1234-5678	0300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로 10	2021-10-15	2021-10-2
2		김영희	남	1980-12-15	02-1111-1234	010-1234-5678	03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로 10	2021-10-15	2021-10-1
3		김영희	남	1980-12-15	02-1111-1234	010-1234-5678	03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로 10	2021-10-12	2021-10-1

- 대상자 등록·상담에서 등록 시 연계여부 팝업에 확인 클릭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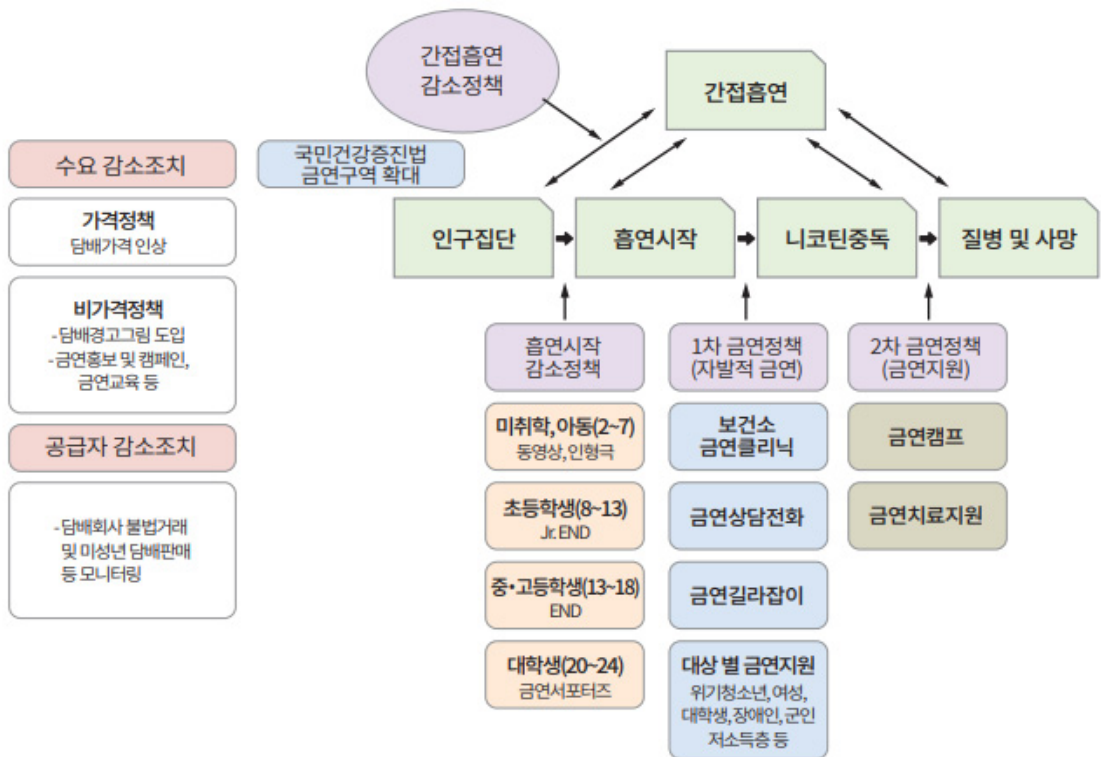
? 조회하신 대상자는 2021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생활습관판정이 '금연필요'인 대상자이며,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을 희망한 대상자입니까?

맞으면 [확인], 틀리면 [취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 취소

III

국가 금연사업 현황



1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1) 금연상담전화(1544-9030)

가) 사업 목적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과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연을 위한 상담전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흡연을 감소는 물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3부 참고자료

나) 추진경과

- 2005년 시범사업 실시(아웃바운드만 수행)
- 2006년 전국단위 금연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실시
- 2007년 국립암센터로 이관 운영
- 2009년 여성, 청소년 신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2013년 담뱃값에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번호삽입
- 2014년 주말, 공휴일 상담시작
- 2015년 상담운영 시작 확대(평일 09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09시 ~18시)
- 2016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7일, 30일, 100일, 1년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단기금연(Mini-Quit) 신규 상담프로토콜 개발
- 2018년 시스템 통합백업 구축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안정성 확보
- 2022년 국립암센터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 사업 이관

다) 수행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라) 사업 내용

- 대표전화(1544-9030)를 통한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 운영 시간: 주중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자동응답 서비스: 연중무휴 24시간)
 - 전화 상담을 이용한 대상자별 흡연특성과 금연 동기화 상태를 고려하여 전담금연상담사 금연일정을 상의한 후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준비 단계인 성인 사전프로그램이 있으며, 대상자별 성인 남성, 여성,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기간에 따라 단기 프로그램(7일, 30일)과 장기 프로그램(100일, 1년)으로 구분됨
 - 단기 프로그램: 8회차 상담이 매일집중 관리 되는 7일 프로그램과 30일 프로그램으로 진행
 - 장기 프로그램: 100일간 14회, 1년간 21회의 대상자별 맞춤 상담 진행

- 12개월간의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후 다시 12개월 동안 지속관리 및 재흡연 방지 독려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맞춤형 SM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을 이용한 교차 상담 제공

- 금연길라잡이 온라인에서 흡연자의 흡연습관과 흡연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추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교차상담 시스템을 통해 금연상담 전화로 전환되어 전담상담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금연성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한 채팅 및 노담봇(챗봇) 상담 제공

- 전문상담사와 1:1 채팅상담 가능
- 시나리오 기반 노담봇(24시간 자동 응대 금연상담 챗봇) 서비스

● 금연교육자료 제공

-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등록자 Tool-Kit 우편발송, 금연캠페인 및 교육홍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 학교, 산업체등에 홍보자료 배포 및 관련 콘텐츠 원본파일 제공
- 전문금연상담사를 위한 대상자별 1:1 맞춤형 금연상담지침서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남성, 여성, 청소년 흡연자)」 배포(전자책) 및 활용 교육 제공

● 학교 및 기업 상담연계를 위한 금연교육과 상담서비스 제공

- 개별 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 금연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기업체 및 단체와의 금연사업연계를 위한 기업체 방문 교육 및 방문상담실시 체계적인 맞춤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

2)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go.kr>)

가) 사업 목적

-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상의 온라인 지원체계 확립하고 근거기반의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금연실천 및 흡연율 감소에 기여

3부 참고자료

나) 추진경과

- 2001년 금연길라잡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년 성인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2003년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2004년 모바일 금연프로그램(2G) 구축 및 운영
- 2007년 여성 금연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2008년 모바일 금연프로그램(3G) 구축 및 운영
- 2009년 인터넷 금연게임 추가 구축 및 운영 신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리뉴얼
- 2010년 스모크프리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 2011년 금연길라잡이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 2013년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예방사업과로 이관 및 운영
- 2014년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통합 앱 개발 및 운영
- 2015년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연계서비스 구축 및 운영(온라인 금연프로그램 이·수관시스템 및 실시간 채팅상담 신규 서비스 오픈)
- 2017년 반응형 웹 기반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 2019년 금연길라잡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포털 구축 및 운영
- 202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로 이관 및 운영

다) 수행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라)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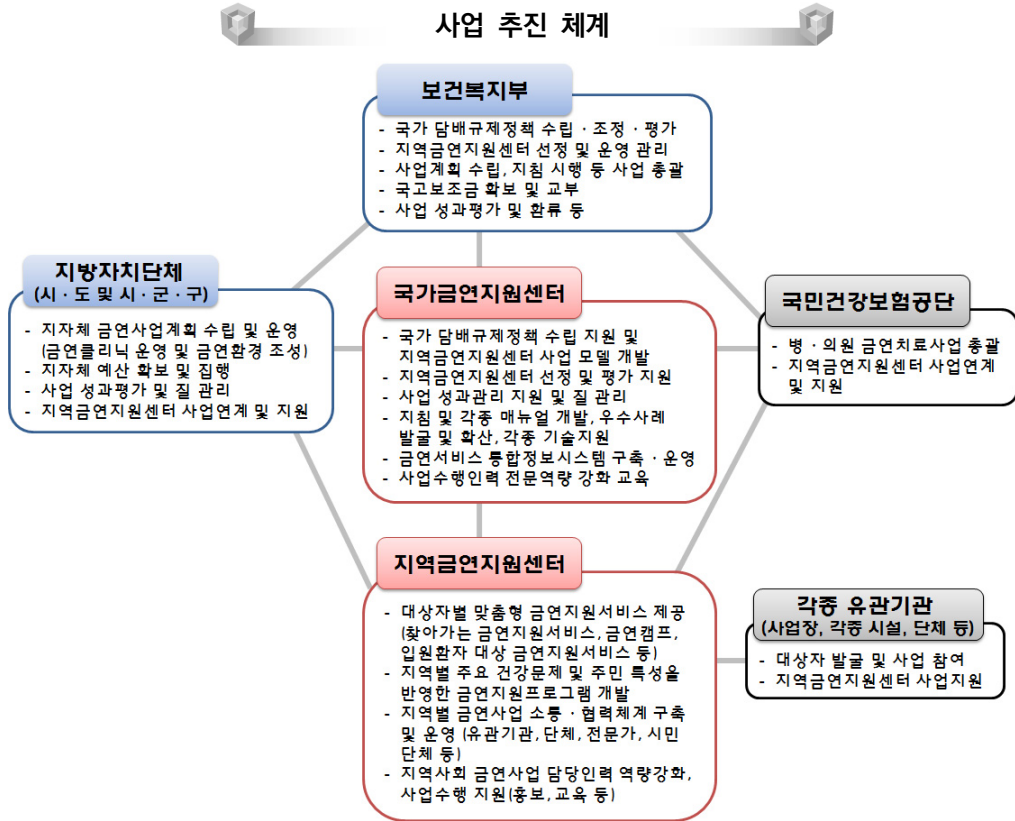
-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콘텐츠 DB구축 및 교육자료 제공
 - 근거 기반의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콘텐츠 갱신 및 개발
 - 수집된 자료 활용한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가공 및 배포체계 마련
 - 지자체 및 관련기관 흡연 및 금연관련 교육자료 배포

- 금연지지 및 실천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 금연커뮤니티 공감마당 및 금연지도 게시판, 전문가 상담코너, 모바일 앱(Apps) 운영
 - 흡연 과태료 감면 대상 금연상담전화-온라인 금연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시나리오 기반 민원응대 챗봇 및 금연상담전화 카카오톡 챗봇·채팅서비스 제공
-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정보 확산 및 서비스 이용 증대
 - 금연매거진(웹진) 발행 및 대량메일 발송(월2회)
 - 금연길라잡이 소셜미디어(블로그) 채널 상시 운영
 - 온라인 채널 프로모션 추진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 4회)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객관적 평가결과 확보

3) 지역금연지원센터(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운영

가) 사업 목적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기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중소기업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흡연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시도 및 실천율을 높이고, 인구집단 간 흡연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반복 재흡연자, 금연이 시급한 급·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전문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시도 및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 금연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나) 사업 내용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기존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금연서비스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 흡연욕구 완화를 위한 행동강화물품, 니코틴 보조제(NRT)제공
- **(금연캠프)**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확보하여 4박 5일간 전문적 금연치료 및 집중상담을 제공하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금연치료(약물, NRT) 및 기초검진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 집단심리상담 및 개인상담
 -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관리)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련 협의체 개최 및 운영, 지역사회 금연사업 기획·평가·교육·조사·연구, 지역 단위 홍보·캠페인 실시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상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및 사업 수행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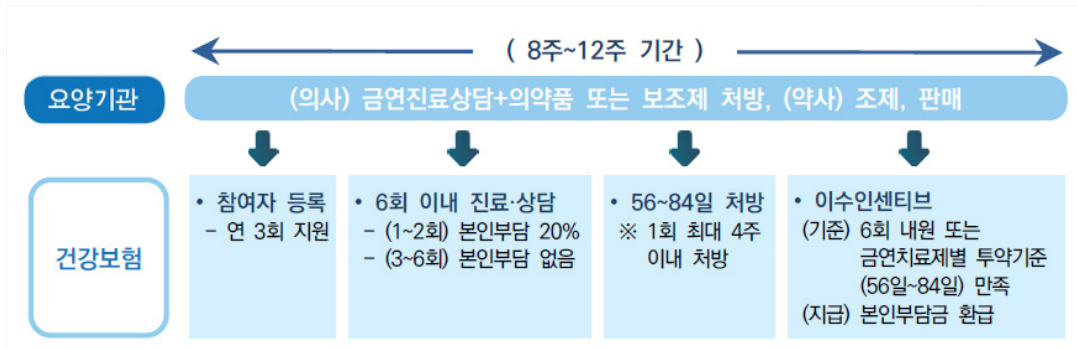
지역	수행기관	대표전화번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02-592-9030
부산	부산대학교 병원	051-242-9030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	053-623-9030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	032-451-9030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	062-222-9030
대전·세종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42-586-8383
울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052-233-9030
경기북부	국립암센터	031-924-9030
경기남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031-385-9030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033-746-9030
충북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78-9030
충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0507-1406-9030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1833-9030
전남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061-372-9030
경북	안동의료원	080-888-9030
경남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055-759-9030
제주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0507-1328-9030

3부 참고자료

4)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병·의원을 통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실시 중(15.2.25일부터)



나) 사업 내용

- (의료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모든 흡연자
- (지원내용)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및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제공
 - 지원예산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1년에 3번으로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
 - (본인부담) 금연치료 1~2회차: 20%, 금연진료 3회차 진료분 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본인부담금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상담료·금연치료 의약품비 전액 지원, 금연보조제 비용 상한액 이내 지원

〈 회차별 참여자 본인부담금 〉

진료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본인부담금	20%	20%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 금연환경조성 사업

1) 금연환경조성 제도화

가) 사업 목적

-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금연구역 확대·강화
 - 담배판매 및 광고 규제 등
- 시도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총괄

2) 대국민 홍보사업

가) 사업 목적

- 국가 금연홍보캠페인을 통한 금연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 형성 및 금연문화 조성 기반 마련
- 청소년 등 젊은 층의 흡연 예방을 위한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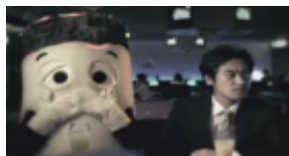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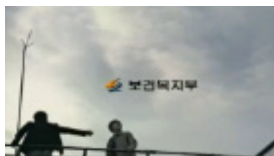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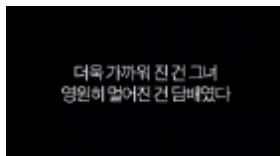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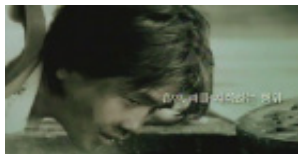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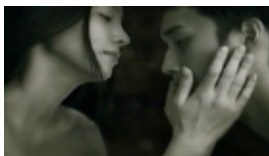
나) 주요 추진경과

- 1998년 금연홍보사업 추진
- 2000년 금연공익광고 제작·송출
- 2002년 증언형 광고 ‘故 이주일 편’ 제작·송출
- 2008년 ‘Say No’ 캠페인 추진
- 2009년 ‘Smoke Free’ 캠페인,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홍보
- 2011년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캠페인, 금연구역 확대 홍보
- 2012년 금연구역 확대 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5차 총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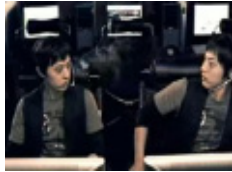
3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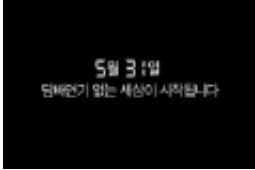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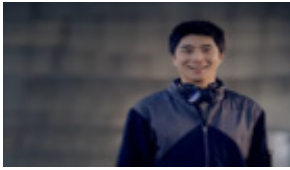
- 2015년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캠페인, 핑거밴드 캠페인 추진
-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홍보, 한국형 Tips 캠페인 추진
- 2017년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캠페인, 금연구역 확대 홍보
- 2018년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캠페인, 궤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홍보 추진
- 2019년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 캠페인, 신종담배 유해성 홍보 추진
- 2020년 ‘담배는 노담, 나는 노담(No담배)’ 노담 캠페인,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추진
- 2021년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노담 캠페인(2.0),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추진
- 2022년 ‘흡연은 도움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전자담배 위험성 환기, ‘노담 멤버스(3.0)’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 추진

역대 금연광고 및 주요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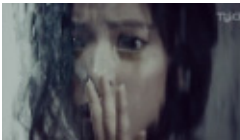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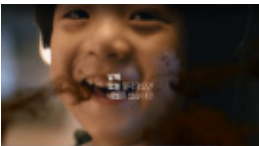
연도	주요 이미지			
2002				
	금연,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연은 가족사랑입니다	담배, 젊음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2003				
	건강약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금연,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연 이제 시작합니다
2004				
	담배를 떠나보낸 빈자리는 건강이 채웁니다			
2005				
	흡연 뇌를 자학하는 행위	흡연 피부를 자학하는 행위	흡연 폐를 자학하는 행위	
2005				
	흡연, 세상과 이별하는 행위(연인 편)	흡연, 세상과 이별하는 행위(부부 편)	흡연, 세상과 이별하는 행위(모녀 편)	

3부 참고자료

연도	주요 이미지			
2006				
	담배 끊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끊습니다(기억력 편)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우정 편)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연인 편)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아빠 편)
2007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흡연자입니다 (PC방 편)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흡연자입니다 (버스정류장 편)	해외 금연정책 소개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연기 편)
				
	담배는 나쁩니다 당신도 나쁩니다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연인 편)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가족 편)
2008				
	간접흡연 no!no!no!라고 말하세요 (간접흡연 편)	간접흡연 no!no!no!라고 말하세요 (횡단보도 편)	간접흡연 no!no!no!라고 말하세요 (지하철 편)	
2009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곳은 언제나 금연구역입니다(국가대표 편)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곳은 언제나 금연구역입니다(안전요원 편)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곳은 언제나 금연구역입니다(임산부 편)	Self 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

연도	주요 이미지		
2010			
	세계 금연의 날 편		Self 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 (금연상담전화 편)
2011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삼각관계 편)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말걸기 편)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입영 편)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추격자 편)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보스 편)
2012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금연구역 확대 편)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올림픽 편)
2013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반갑습니다 편)
2014			
	담배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폐암 편)	담배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뇌졸중 편)	당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죽음의 게임을 끝내십시오

3부 참고자료

연도	주요 이미지			
2015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폐 편)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뇌 편)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병주세요 편)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금연캠프 편)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병의원 금연치료 편)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편)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나쁜 거예요? 편)	
2016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폐 편)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후두암 편)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교통사고 편)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버킷리스트 편)	담배가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담배의 끝은 질병입니다 (슈퍼영웅 편)		
2017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편)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편)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유해성분 편)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간접흡연 편)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차가운 시선 편)		

연도	주요 이미지		
2018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담배와의 전쟁 편)	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 (흡연갑질 편)	조종 당하지 마십시오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흡연노예 편)
2019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금연본능 편)	인생의 좋은 일은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 (금연의 가치 편)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전자담배 편)
2020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아요 '담배는 노담, 나는 노담' 편	청소년 모두가 노담 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	담배 아닌 척 하는 전담을 이기는 가장 멋진 노담 '흔들릴 수는 있어도' 편
2021			
	'담배와도 거리두기' 편(코로나19 특별편)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아무리 너라도', '호기심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편	

3부 참고자료

연도	주요 이미지		
2021			
	‘노담태그’ 편		‘도와줄게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편
2022			
	“랜창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전자담배 편)	“앞으로도 꼭 담배에 지지 않을 첫 번째 노담세대, 노담멤버스” (노담멤버스 편)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금빛조연 편)

다) 추진전략

- 대상별(성별, 연령, 흡연여부 등) 맞춤형 금연홍보캠페인(전통매체, 뉴미디어, 오프라인 프 로모션 등) 기획 및 추진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병원 금연치료 등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의 상시 홍보를 통 한 금연 행동 유발

라) 사업 내용

- 금연광고 기획 및 제작
 - 금연에 대한 사회적 화두 제시, 다양한 기법과 주제를 통한 금연광고 기획·제작
 - TV·라디오·옥외 등 매체별 전략을 통한 노출 극대화
- 젊은 층 대상의 온라인 홍보 기획·운영
 - 청소년 및 젊은 층이 선호하는 콘텐츠(금연웹툰, 바이럴 영상, 인포그래픽 등) 기획· 제작
 -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유튜브 등 2차 확산을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

● 국민 참여형 오프라인 프로모션 운영

-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5.31)운영을 비롯한 국민 참여형 프로모션 추진
-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등과 연계한 금연 홍보 캠페인 추진

● 금연홍보 콘텐츠 개발 및 배포

- 대국민 대상의 다양한 금연 홍보·교육 콘텐츠 개발·배포
- 유관기관의 금연사업 홍보 지원 및 전국 단위의 통일성 있는 금연홍보캠페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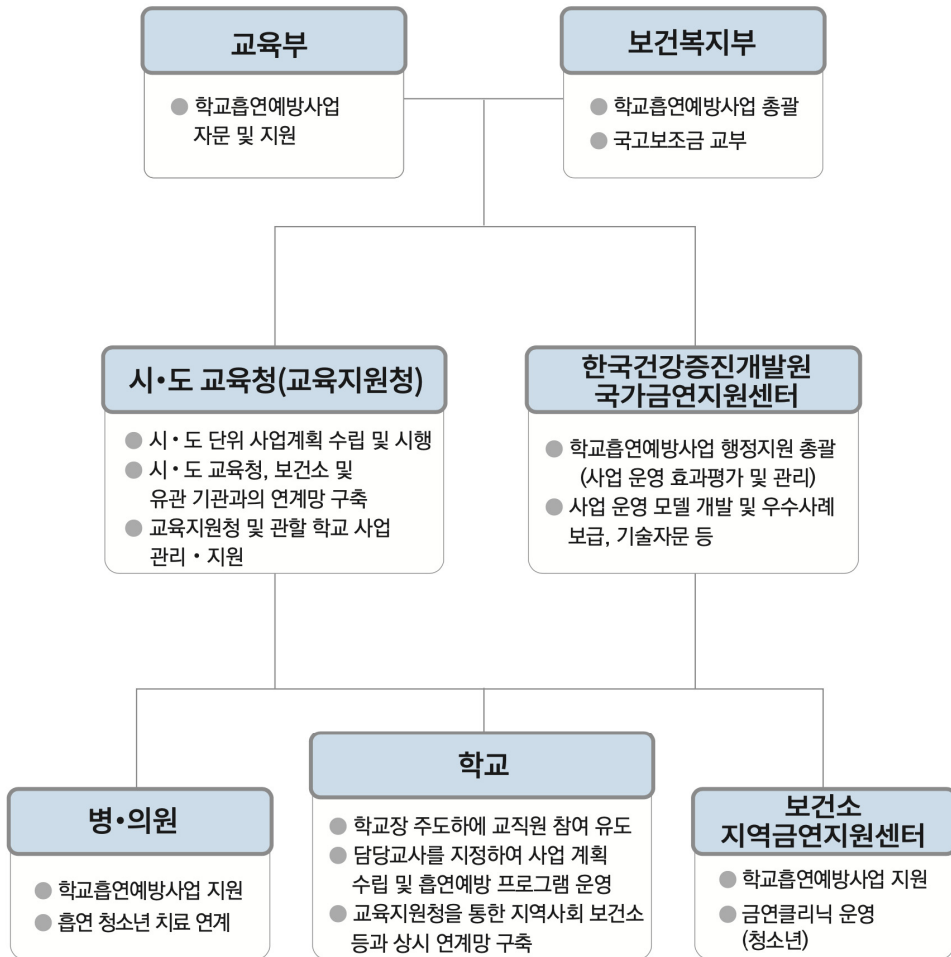
3 학교 흡연예방 및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

1) 학교흡연예방사업

가) 사업 목적

- 흡연시도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령기 청소년의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흡연을 감소 도모

나) 사업 체계



다) 추진경과

- 1999년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시작
- 2014년 금연선도학교 1,381개교(전체 학교의 10% 운영)
- 2015년부터 사업대상을 전체학교로 확대(2015년: 11,736개교)

라) 수행기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마) 사업 내용

- (교육청)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 학교장 및 교사 대상 연수, 교육지원청 및 학교 사업 운영지원, 시·도교육청 특화사업 운영 등
- (학교) 비흡연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금연 교육 및 활동, 흡연학생 관리, 교직원 및 학부모 활동, 지역사회 협력사업, 심화형 학교 특화사업 운영 등

구분	
보건복지부	• 학교흡연예방사업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운영 평가 및 환류 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학교흡연예방사업 행정지원 총괄(사업 운영 효과평가 및 관리) • 사업 운영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기술자문 등
시·도교육청	• 시·도 단위 학교흡연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교육청, 보건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 사업 관리·지원 • 관내 학교 및 보건소 간 연계망 구축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흡연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교육청 사업 협조 및 관할 지역 학교사업 관리·지원 • 관내 학교 및 보건소 간 연계망 구축
학교	• 학교장 주도하에 전 교직원 참여 유도 •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소 등과 상시 연계망 구축

3부 참고자료

2)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가) 사업 목적

-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5~7세)를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정착 및 성장기 흡연 진입 방지를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유도
- 주변 흡연자(가족, 친지 등)에게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며,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통한 주변 흡연예방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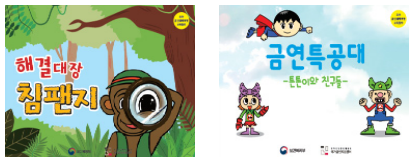
나) 수행기관

- 시·도청 및 교육청,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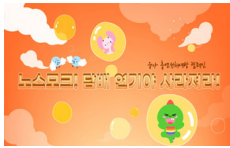
-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영상, 동화책 및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유관기관에서 교육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모음집 제공
 - ※ 유아 흡연위해예방 교육자료 모음집 : <http://webzine.khealth.or.kr/ebook/kids> 참고
 - ※ 단, '2022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은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교육교재로써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전문 강사교육 수료자만 교육 가능함, 별도 요청 시 강사 위탁교육 및 전문 강사 파견 가능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접 방문 교육(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추진
 - ※ 방문교육 신청(2월~3월 중)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alth.or.kr/nsk>) 참고
- 놀이형 체험관 지역순회 전시 추진
 - ※ 대국 국립중앙과학관(~ 23.12) 및 지역 순회전시 예정(강원,전라,경상,제주 등)
- 흡연위해예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 ※ 교육과정 수강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https://lms.khepi.or.kr>) 참고
- 유아교육·보육기관 우수사례 및 유아의 그림 공모전 개최('16년~)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교육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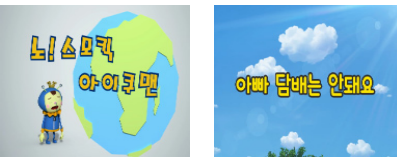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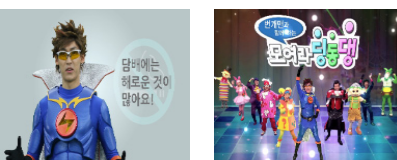
구분	자료내용	비고
동화책	- (2023) 노담밴드의 귀환(가제)	- (2023) 노담밴드 시리즈 3편으로 2023.04부터 실시 예정인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교육 후 공개 예정
	- (2022)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2편)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교육교재	
	- (2021) 동화책 4종 • 금연마을 만들기 • 이사를 왔어요 • 민기의 소원편지 • 아빠는 할 수 있어요	
	- (2021) 노담밴드의 연주회(1편)	
	- (2019) 창작 캐릭터 활용 동화책(5종)	
	- (2016) 유아 참여 창작동화 4종	 

3부 참고자료

구분	자료내용	비고
교사용 지도서	- (2022)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교사교육 심화과정 교재	
	- (2021)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교사교육 심화과정 교재	
	- (2020)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교사용 지도서(기본, 심화, 부록)	
교구	- (2022) 컬러링북 “반가워요 노담랜드”	
	- (2022) 가족과 함께 노담으로 튼튼해져요	
	- (2021) 유아흡연위해예방 컬러링북 3종	

구분	자료내용	비고
	- (2021) 유아흡연위해예방 스티커북 2종	
	- (2020) 내가만든 미로놀이	
	- (2019) 교구(6종) • 담배를 피우면 폐가 아파요 • 용용이 아저씨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해주세요 등	
	- (2015) 교구(2종) •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 담배연기를 피해서	
동영상	- (2022) 인형극 “노스모크 담배연기가 사라져라”	
	- (2022)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	
	- (2022) 번개맨 영상	

3부 참고자료

구분	자료내용	비고
	– (2021) 노담밴드의 연주회	노담밴드의 연주회 
	– (2021/2022) 노래와 율동 “노담, 건강해져요”	
	– (2021) 영상동화 4편 • 금연마을 만들기 • 이사를 왔어요 • 민기의 소원편지 • 아빠는 할 수 있어요	
	– (2017~2019) ‘헬로 카봇’을 활용한 영상	
	– (2016)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사업 소개 영상(2분, 20초)	
	– (2015) 보로로, 타요, 아이쿠 영상 • 노!스모크 아이쿠맨 • 아빠 담배는 안돼요	
	– (2015~2017) 번개맨 교육 캠페인 영상	

4 국제협력

1)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개요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담배’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 '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05년 2월 발효, '21년 12월 기준 168개국 서명, 182개국 비준

- 담배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조항별 이행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정서 개발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목적

-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피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추진경과

- 1990년대 전 세계가 담배를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담배규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담배규제기본협약 기본 틀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등 개최
-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 2005년 2월,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

※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 서명, 2005년 5월 비준

- 20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번의 총회 개최

※ 특히 제5차 당사국 총회는 2012년 11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제6차 총회(2014년 10월) 의장국을 역임함

3부 참고자료

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당사국총회

●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및 가이드라인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약의 집행부로서 매 2년마다 개최

총회결과

구분	기간 및 개최국	참여국	주요사항
1차	2006.2.6~2.17 스위스 제네바	113개	• 협약 사무국 운영방침 및 행정규칙 채택 •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논의 착수
2차	2007.6.30~7.6 태국 방콕	146개	•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상체 발족 • 제8조 가이드라인 채택
3차	2008.11.17~11.22 남아공 더반	129개	• 제5조 3항 가이드라인 채택 • 제11조 및 13조 가이드라인 채택
4차	2010.11.15~11.20 우루과이푸타 델 에스테	134개	• 제6조 가이드라인 실무그룹 발족 •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일부 채택 • 제12조 및 제14조 가이드라인 논의
5차	2012.11.12~11.17 대한민국 서울	141개	•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 제6조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 및 권고사항 제시 • 제9조 및 제10조 가이드라인 보강
6차	2014.10.13~10.18 러시아 모스크바	137개	•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가이드라인 채택 • 17조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과 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에 관한 정책권고 채택 •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 예방 및 규제에 관한 결정문 채택 • FCTC 발효 10주년 영향평가 수행 결정
7차	2016.11.5~11.13 인도 뉴델리	134개	• 협약 발효 10주년 기념 WHO FCTC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결과 발표 • 제9·10조 담배성분 규제 및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채택 • 담배규제전략 개발의 성(性) 인지적 요소 고려, 오락매체에서의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등 신규 의제 논의
8차	2018.10.1~10.6 스위스 제네바	148개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발효 후속조치 논의 • 오락매체 속 담배묘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제13조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그룹 발족 • 결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결련과 동일한 담배규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 채택
9차	2021.11.8.-11.13. 스위스 제네바* * 비대면 회의로 진행	162개	• 코로나19 대유행 후의 회복에 대한 선언문 채택 • WHO FCTC 투자기금 운영에 관한 결정문 채택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구성

- 기본협약인 모(母)조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 부속서, 별도의 약정, 국내법에서 구체적인 이행사항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내용

- 총 11장 38조항으로 구성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 보호조치 등 포함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구성

구분	장	주제	조항	세부주제
도입	1장	도입	1조	용어의 사용
			2조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주요조치 및 의무	2장	목표, 기본원칙 및 일반의무	3조	목표
			4조	기본원칙
			5조	일반의무
	3장	담배수요 감소조치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7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비가격조치
			8조	담배연기예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9조	담배제품 성분배에 관한 규제
			10조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16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17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
	5장	환경 보호	18조	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19조	책임

3부 참고자료

구분	장	주제	조항	세부주제
	7장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교류	20조	연구, 감시 정보교환
			21조	보고 및 정보교환
			22조	과학·기술·법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지식의 제공
	8장	제도적 장치 및 자원	23조	당사국 총회
			24조	사무국
			25조	당사국 총회와 정부간 기구간의 관계
			26조	자원
	9장	분쟁해결	27조	분쟁해결
	10장	협약의 발전	28조	협약의 개정
			29조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11장	최종조항	30조	유보
			31조	탈퇴
			32조	투표권
			33조	의정서
			34조	서명
			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또는 가입
			36조	발효
			37조	수탁자
			38조	정본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및 비준

- 2003년 7월 21일 서명, 2005년 5월 16일 비준
- 비준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의무 부여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국내법 제도 수정 의무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 협약 발효 3년 이내 → 2008년 까지 이행의무

-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 :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 2010년 까지 이행의무
- 제21조 이행보고서 제출 : 협약 비준후 2년, 5년차, 2012년부터 2년 주기 제출 (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 2020년 제출)

나)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추진 현황

담배규제기본협약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조항	주요내용		
제6조	조세 및 가격 정책	• 담배에 대한 조세 및 가격 정책 시행 또는 면세담배 수입·판매 제한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담배부담금), 지방세법 제52조(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부과(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1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부가가치세) * '15년 1월 월련 1갑(20개비) 기준 2,000원 인상
제8조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	•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등 공공 장소에서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명시), 제9조 5항(지자체별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 및 지자체 장이 흡연행위 감시·계도 및 시설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9조 6항(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 근거)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흡연 금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의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 금지)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지정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6조(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해 흡연 금지)
제9조 제10조	담배성분 및 공개	• 담배제품의 성분, 배출물에 대한 시험측정 및 규제 • 담배제조·수입업자의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에 대한 정보공개	•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저발화성 담배 규정 의무화), 제25조의2(담배연기의 성분 측정 의뢰 및 담배 연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 표시 의무화)

3부 참고자료

담배규제기본협약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조항	주요내용		
제11조	담배포장 및 라벨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 (협약 발효후 3년 이내) * 담배의 포장에 최소 한면의 30% 이상 차지하는 건강 경고 기재, 경고그림 권고 * 담배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표시(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포함) 금지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담배사업법 제25조 -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그림을 50% 이상 크기로 발암성 물질(6종), 금연상담전화와 함께 표기 의무화 -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부 전시 광고에도 경고문구 표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담배에 포함된 가향물질 표시 금지) - 담배사업법 제25조의5(오도문구 금지)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 담배규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촉진 및 강화 - 보건관계자, 대중매체 전문가 등에 대한 적절한 훈련 또는 인식프로그램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 하여야 함)
제13조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 담배제품의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협약발효 후 5년 이내) * 오도가능성 있는 광고, 판촉, 후원 금지, 판촉 및 후원에도 경고 포함, 구매 촉진용 직간접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 * 담배업계의 광고·판촉·후원비용을 정부당국에 공개 *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담배관련 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 * 국제적 행사(활동)에 대한 담배후원 금지 또는 규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 -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에서의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부착 - 연간 10회 이내 잡지 게재 - 여성 또는 청소년을 제외한 사회·문화·체육 행사 후원 -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에서의 광고 -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및 시행령 제10조 (담배 무상제공 금지, 소매인에게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담배 판매장려금, 경품, 상품권 등의 제공행위 규제)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을 위한 조치	담배 중독치료 및 금연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증진법(학교, 직장, 보건소 등을 통한 금연프로그램과 니코틴 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 '05년 3월부터 전국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에서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05년 하반기 부터 금연상담전화 개설

담배규제기본협약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조항	주요내용		
제15조	담배불법 거래 방지	• 담배제품 원산지 판정을 위한 표시 시행 * 판매지역을 명시하는 문구, 추적체제 개발 검토 등	• 담배사업법 제11조 및 제13조(담배 제조는 허가제, 담배수입판매 및 담배도매업은 등록제 채택) • 담배사업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7조(특수용 담배 공급 범위 규정 및 구분 표시) • 담배사업법 제20조(담배의 포장 및 내용 변경 판매 금지) • 담배사업법 제30조(불법 담뱃잎, 담배제품 몰수 및 가액 추징) • 관세법 제235조 및 관세청 훈령(위조 및 불법 복제 제품 통관 보류 및 유치, 몰수몰품 폐기 및 처분)
제16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	• 18세 미만(혹은 해당 국가법이 규정한 성년 연령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 구매자에게 적정 연령임을 증명하도록 요구 • 구매자가 직접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판매(선반 진열 등) 금지 • 담배형태의 미성년자용 상품(과자류, 완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담배 모양의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 청소년보호법 제28조(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포함) 판매 금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담배 모양의 식품 판매, 제조 등의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 담배사업법 제20조(소량판매 등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 금지)

3부 참고자료

[부록1] 담당자 연락처

1. 보건복지부

- 총괄부서

부서명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증진과	• 금연 사업 총괄	이희정 김민재	044-202-2824 044-202-2823	evonne12@korea.kr minjae1101@korea.kr
	• 담배규제 정책, 금연구역 총괄	이원의 공혜주	044-202-2822 044-202-2825	deneb1@korea.kr khj24@korea.kr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지역금연팀 : 안내서, 사업추진 운영지원, 성과관리 및 평가 등 관련 문의

부서명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금연팀	• 사업운영 총괄	정주연	02-3781-2211	claire@khepi.or.kr
	• 금연클리닉 관련	유선영	02-3781-2213	coco@khepi.or.kr
	• 금연구역 관련	김지연	02-3781-2217	uhg99199@khepi.or.kr

* 본 안내서 파일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업무'에서 확인 가능

[부록2] 관련 사이트

● 국외 사이트

- FCTC 홈페이지 : <http://www.who.int/fctc>
- WHO TFI(Tobacco Free Initiative) 홈페이지 : <http://www.who.int/tobacco>

● 국내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hepi.or.kr>
- 금연두드림 :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금연길라잡이(금연상담전화) : <http://www.nosmokeguide.go.kr>
- 대한금연학회 : <http://www.ksrnt.org>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http://www.kash.or.kr>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지침

발 간 종 류 | 정책보고서

관 리 번 호 | 정책-03-2022-020-10

등 록 일 | 2022년 12월

발 행 일 | 2022년 12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발 행 인 | 조현장

집 필 진 | 지역금연팀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9층

전 화 번 호 | 02-3781-3500

홈 페이지 | www.khepi.or.kr

인 쇄 처 | 명문인쇄공사/ ☎ 02-2079-9200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



보건복지부

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